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도로표지와 신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Sign and Signals) 국문 번역



2006년 개정본



SMART TRAFFIC
RESEARCH LABORATORY

교통대학원 스마트교통연구실

도로표지와 신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Sign and Signals)

서명국들은 국제도로교통의 활용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신호, 문양, 노면표시의 국제적 표준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아래의 규정에 합의한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설명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서명국가의 '국내 법규'는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효력을 발하는 국가법, 지역법 및 규정 전체를 의미한다.
- (b) '도시 심화 구역'은 도시 심화 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유입부와 유출부를 기준으로 혹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¹이 규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2 각주 참조

- (c) '도로'는 공공 교통이 사용하는 모든 도시부 도로면 및 지방부 도로면을 의미한다.
- (d) '차도(carriageway)'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로는 분리시설 혹은 구배의 구분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여러 개의 차도로 구성된다.
- (e) '차로'는 세로 방향의 노면표시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차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로 구획구간이며 그 폭은 '차량'이 진행하기에 충분히 넓어야 하며 이때 '차량'은 오토바이가 아니다.
- (f) '교차로'는 동일한 구배에서 교차하는 사거리, 합류점 및 갈림길과 합류점 및 갈림길 주변 여유 공간을 포함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 (g) '간널목'은 철로 및 선로가 도로와 평면 교차하는 모든 교차로를 의미한다.
- (h) '차량 전용도로'는 차량의 흐름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건설된 도로를 의미하며 이 때 차량은 차량 전용도로 상에 테두리로 둘러지는 지역에 진입하지 않는다.
 - (i) 특정 지점 또는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하여 차량 전용도로는 분리대 또는 분리시설물로 차도를 구분한다.
 - (ii) 차량 전용도로는 어떠한 도로, 철로, 선로, 인도와 평면교차하지 않는다.
 - (iii) '차량 전용도로'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 (i) 차량의 운행상태 중
 - (i) '정차'는 사람 또는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소요되는 시간동안 정지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ii) '주차'는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방해물과 충돌하거나 교통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이 정지한 경우이며 그 정지 기간은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내릴 때 필요한 시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서명국은 위의 제(ii)항의 범위 내에서 국내법이 정한 시간이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제(i) 항의 범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정한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주차했다고 볼 수 있다.
- (j) '자전거'란 최소 두개의 바퀴를 가지며 탑승한 사람의 근력으로 생성되는 동력을 페달이나 손 크랭크를 통해 전달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 (k) '엔진부착자전거'란 실린더 용량이 50cc 를 넘지 않고, 최대속도가 시속 50km/h를 넘지 않는 내연기관을 갖춘, 바퀴가 두 개 혹은 세 개의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명국들은 국내법에 따라서 그 용도상, 특히 페달로 추진된다는 특성, 혹

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3번 항목 (b)호 참조

²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소개된 추가 정의 참조(제3번 항목 참조).

은 설계최대 속도나 중량 그리고 엔진의 특성이 일정한도를 넘어서는 특성을 보유한 운송수단을 엔진부착자전거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엔진부착자전거를 자전거로 간주하여 해당국 국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아니 된다.

- (l) '오토바이'는 사이드카의 유무와 관계없이 두개의 바퀴와 엔진이 부착된 차량을 의미한다. 서명 국가들은 비적재시 400 Kg을 넘지 않는 바퀴 세 개짜리 차량도 국내법상에서 오토바이로 취급할 수 있다. 서명 국가들이 제46조 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엔진부착자전거를 오토바이로 간주할 수 있으나 '오토바이'라는 용어는 '엔진부착자전거'를 그 의미에 포함하지 않는다.³
- (m) '동력구동(Power-driven) 차량'은 엔진부착자전거를 오토바이로 간주하지 않는 서명국의 영토 내에서 엔진부착자전거와 선로차량 이외에 자가 추진동력을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 (n)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차량과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비 동력 차량을 이끄는 차량을 의미한다. 이는 동력구동차량과 비동력 구동차량이 연결되어 운행되는 굴절버스도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농업용 트랙터 같이 극히 드문 경우에 사람 또는 물건의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과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비동력 차량을 이끄는 차량은 '자동차'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트레일러'는 동력구동차량에 의해 이끌리도록 고안된 운송수단을 의미하며 그 뜻은 '세미 트레일러'를 포함 한다.
- (p) '세미 트레일러'는 일부분이 자동차에 얹혀져 있으며, 나머지 상당 부분은 해당 자동차에 걸쳐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 (q) '운전자'는 자동차나 자전거를 포함한 그 외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사람, 또는 도로를 따라 가축(한 마리 혹은 그 이상, 수레 동력용, 짐 운반용, 안장용)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한다.
- (r) '최대 적재중량'은 그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공공사업기관에서 인가 받은 적재차량의 최대 중량을 의미한다.
- (s) '적재중량'은 승무원과 승객이 차량이 탑승하였을 경우의 실제 중량을 의미한다.
- (t) '교통흐름 방향'과 '교통흐름에 적절한 방향'은 국내법규 상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마주하는 차량이 해당 차량의 원편으로 주행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경우 우측 방향을 의미하고: 그 반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좌측 방향을 의미한다.
- (u)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는 규제의 의미는 운전자가 전진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차량운전자가 방향이나 속도를 갑작스레 변환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의 행동을 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 (v) 4 각주 참조

제2조 협약의 부록

본 협약의 부록사항은:

부록1: 도로표지

A절: 위험경고표지

B절: 우선권표지

C절: 금지제한 표지

D절: 의무표지

E절: 특별규정표지

F절: 안내편의시설표지

G절: 방향위치표지

H절: 부가 패널

부록2: 노면표시

³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3번 항목 1호 참조

⁴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도입된 추가 정의 참조(제3번 항목 참조).

부록3: 부록1에 언급된 표지판, 문양(symbols) 및 패널 색상 제작
이며 본 협약에서 제시하는 필수적인 부분들이다.

제3조 서명국들의 의무

1. (a) 본 협약의 서명국들은 본 협약이 제시하는 도로표지, 신호, 문양, 노면표시 체계를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채택할 의무가 있다.
 - (i) 특정한 규칙의 의미를 알리기 위하여 또는 특정한 정보를 도로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본 협약이 표지판, 문양 또는 노면표시를 규정하였을 경우, 본 조 2항 및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제약을 받으며 서명국은 다른 표지판, 문양, 노면표시를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ii) 본 협약에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정한 규칙의 의미 또는 특정 내용의 정보에 대한 표지판, 문양, 노면 표시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서명국들은 표지판, 문양, 노면표시를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표지판, 문양, 노면 표시는 본 협약에서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본 협약이 규정한 체제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 (b) 교통제어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또 본 협약의 개정안 제출에 앞서 현장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명국들은 도로의 특정구간에서 실험적으로 본 협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서명국 영토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지판, 문양, 설치 방법, 노면표시가 본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체계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본 협약이 부여한 의미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명국은 가입 후 4년 이내에 본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표지판, 문양, 설치 방법, 노면표시의 의미를 교체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3. 서명국은 본 협약 가입 후 15년 이내에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판, 문양, 설치 방법, 노면표시를 교체할 의무가 있다. 이 기간동안 도로 이용자들이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계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본 협약이 규정하는 표지판 및 문양과 더불어 기존에 사용되던 표지판 및 문양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⁵
4. 본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서명국들이 채택하여야 한다고 본 협약을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대로, 서명국들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종류의 수를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4조 서명국들이 금지시켜야 할 조항

- (a) 지주대 혹은 다른 교통제어시설물에 본래 시설물의 목적과 무관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서명국 또는 산하기관에서 비영리단체에게 표지판 부착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단체의 표지 또는 지주대가 운전자의 교통표지 이해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치가 허용된다.
- (b) 교통 표지판 또는 교통제어시설물과 혼동되며, 표지판과 교통제어시설물의 판독성 및 기능성을 저하하고, 도로 사용자의 눈을 현혹시키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교통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게시판, 통지, 노면표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⁵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4번 항목 참조

제2장 도로 표지

제5조

1.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도로 표지체계는 아래의 등급에 따라 구분된다.
 - (a) 위험경고 표지 : 본 표지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도로상의 위험을 경고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b) 규제표지 : 본 표지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의무, 제한 혹은 금지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표지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i) 우선권 표지
 - (ii) 금지제한 표지 ;
 - (iii) 의무 표지;
 - (iv) 특별규정 표지
 - (c) 정보표지 : 본 표지는 주행차량 운전자를 안내하고 다른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표지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i) 안내편의시설 표지:
 - (ii) 방향위치지시표지:
전방방향표지
방향표지
도로확인표지
장소확인표지
확증표지
지시표지
 - (iii) 부가 패널
2. 본 협약이 여러 표지나 문양 중 한 개를 채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 (a) 서명국은 하나의 표지 또는 문양을 채택하여 자국 전체영토에 적용할 의무가 있다.
 - (b) 서명국은 위의 선택에 대해 지역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c) 본 협약 제3조 3항의 규정은 채택되지 않은 모든 표지 및 문양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6조

1. 표지는 그 의미가 전달되는 대상 운전자가 적절한 시간 내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적정 도로변에 차량의 주행방향으로 표지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차도 변에 설치되거나 또는 반복 설치될 수 있다. 지역 여건상 운전자의 가시성 및 판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변에 차량 주행방향으로 설치된 표지는 도로의 상부 또는 도로의 반대편에 반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2. 모든 표지는 차량이 진행하는 차도의 전체 폭 구간을 주행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로의 노면표시로 구분된 차로로 구성된 차도의 경우 표지는 해당 차도에서 하나 혹은 여러 차로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선택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a) 표지와 함께 필요에 따라 수직의 화살표를 차로의 상부에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b) 노면표시로 차도의 바깥쪽 차로에만 표지의 적용이 제한됨이 표시된 경우, 또 그러한 표지가 이미 노면표시로 제시된 해당 지역 규정을 강조하는 경우, 표지는 차도의 연석에 설치되어야 한다.
 - (c) 본 협약의 부록 1, 구분표지 E, 세부구분 II 1항과 2항에 제시된 표지 E, 1 과 E, 2 또는 부록 1의 구분 G 세부구분 V의 1

- 향과 2항에 제시된 표지 G, 11 과 G, 12 는 차도의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3. 만일 여러 개로 구분되는 차도로 이루어진 도로변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관련 공공기관이 해당 표지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분리시설물 상부에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표지를 가장자리에 반복 설치할 필요가 없다.
 - 4.6 국내 법규를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규정함을 권장한다.
 - (a) 표지는 차도상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만일 가장자리에 설치된 경우 보행자의 흐름을 가능한 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차도의 양측 높이가 다르며 양측에 표지가 설치된 경우, 해당 표지 중 가장 낮게 설치된 표지의 가장 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경로 및 동일 등급의 도로에 해당 표지는 일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b) 표지의 패널 규격은 먼 거리에서도 잘 보여야 하고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항의 (c)조 조항규정에 따라서 패널의 규격은 평균 차량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c) 위험경고표지와 규정표지(특정규정표지 제외) 패널의 규격은 서명국의 영토 내에서 반드시 표준화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유형의 표지는 소형, 일반형, 대형, 초대형 네 개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형표지는 주변 여건상 일반표지를 적용하기 어려운 곳이나 교통흐름이 빠르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의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에 설치된다. 대형표지는 폭이 넓으며 교통흐름이 빠른 도로에 설치된다. 초대형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교통흐름이 상당히 빠른 도로에 설치된다.

제7조

1. 표지의 야간 시인성과 판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심화 구역 내 조명시설이 갖추어진 도로변에 설치된 주정차 표지를 제외한 기타 위험 표지 또 규정 표지는 도로 이용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명 시설 또는 반사 물질 및 반사 시설물로 보조되어야 하는 내용을 국내 법규에서 규정함을 권장한다. 표지에 사용되는 여러 색상들의 명도는 각각 '대비 조명' 또는 '어두고 가는 조각을 사용하여 차별화 할 수 있다.⁷
2. 협약국은 형광 재료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표지에 이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은 조명식·재귀반사식 및 형광 표지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재귀반사 재료의 각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표지 내에서 서로 다른 색상의 어두운 또는 밝은 도형 요소는 각각 대비되는 밝은 또는 어두운 좁은 띠를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5.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요일에만 적용되는 정보·경고 또는 규칙을 전달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유효한 경우에만 표시되는 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1. 표지의 국제적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협약이 규정하는 표지 및 신호체계는 표지의 모양 및 색상의 활용을 토대로 각 표지의 종류를 구분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문자보다 문양을 사용한다. 서명국이 본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문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본질적인 특성까지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is 가변표지가 사용된 경우, 표지에 기입되는 내용과 문양은 본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지와 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표지판과 신호의 내용이 분명하고, 또 기술적으로 표지판과 신호가 표현 가능한 경우 밝은 색 배경에 어두운 색 문양을 어두운 색 배경에 밝은 색 문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표지에 사용되는 적색 문양 및 적색 문양이 기입된 표지판의 테두리선 색상은 반드시 상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서명국은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표지나 문양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본 협약 제3조 1항

⁶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5번 항목 참조

⁷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도입된 추가 문 참조(제6번 항목 참조).

- (a)-(ii) 내용에 의거하여 새로운 표지나 문양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표지, 부가 표지, 패널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설명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설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표지, 부가 표지, 패널이 제공하는 정보의 이해도가 저하되지 않는 경우로 국한된다.⁸
 4. 관계기관이 표지 또는 문양의 의미를 더욱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리고 표지의 내용이 특정 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 부록 1에서 규정하는 표지설명 또는 부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표지, 또 특정 운전자를 제외하는 규정표지의 경우, 본 협약 부록1 구분H 단락4 (패널 H, 5^a ; H, 5^b와 H, 6)이 규정하는 부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5. 본 조 제3, 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어는 해당국 내에서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 또는 서명국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엔의 공식 언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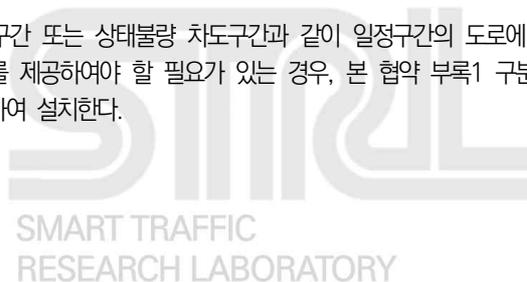
제9조 위험경고 표지판

1. 부록1 구분 A 세부구분 I은 위험경고표지의 예를, 구분 A 세부구분 II는 도로표지에 적용되는 문양들과 그들의 적용 예를 제시한다. 본 협약의 46조 2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위험경고표지의 형태로 A^a 또는 A^b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⁹
2. 위험경고표지의 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서는 안 되나 위험경고표지는 주의진행 운전자에게 조차 위험이 되는 도로의 위험 잠재요소를 경고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경고표지는 차량의 일반적인 주행속도, 표지 가시거리 등의 교통요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점(위험지역으로부터 설치지점까지의 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표지와 위험구간시작 지점 간의 거리정보를 본 협약 부록 1 구분 1에 제시된 부가 패널 H에 해당 부록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제시되는 정보는 운전자가 표지에서 위험구간시작 지점까지의 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 그 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경고표지는 특별히 자동차전용도로 및 이에 준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반복 설치되어야 한다. 반복 시에는, 표지와 위험구간시작 지점간의 거리에 대한 정보가 본조의 4항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동교 및 건널목에 설치되는 위험경고표지의 경우, 아래 규정의 적용은 서명국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

백색 또는 황색 표지바탕에 적색사선 3개가 그려진 세로형 직사각형 패널은 부록 1 구분 A 세부구분 II A5, A25, A26, A27 항이 규정하는 문양 및 조항에 따라 위험경고표지 하단에 부착될 수 있다. 백색 또는 황색 표지바탕에 하나 또는 두개의 적색사선이 그려진 표지판과 동일한 형태의 여러 패널들로 구성되는 부가 표지들은 표지 설치지점과 철도건널목간 거리의 1/3 지점, 2/3 지점에 반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부가 표지들은 차도의 건너편 방향에 반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이 항이 언급하는 패널에 대한 세부기술은 부록 1 구분 A 세부구분 II 29항에서 제시한다.

6. 만일 일련의 위험 도로구간 또는 상태불량 차도구간과 같이 일정구간의 도로에 대한 위험경고표지를 설치할 경우, 또 그러한 구간의 길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협약 부록1 구분H 부가 패널 H2에서 규정하는 패널 및 설치조건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⁸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8번 항목 참조

규정 표지판

제10조 우선권 표지판

1. 교차로에서 우선권에 관한 특별규정 내용을 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표지는 본 협약 부록1번 B절 B1, B2, B3 및 B4 이다. 협소한 도로에서 우선권규정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표지는 B5, B6 이다.
2. B1의 양보표지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함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3. B2의 정지표지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운전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함을 지적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본 협약 제46조 제2항에 의거 서명국은 정지표지로 B2^a 와 B2^b 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무총장에게 알려야 한다.¹⁰
4. B1 또는 B2 표지는 관련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차로 이 외의 지점에 설치될 수 있다.
5. B1번과 B2번 표지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진행우선권을 양보하는 경우 차량이 정지하는 지점, 또는 절대로 지나서는 안 되는 지점에 가능하면 구배차이 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6. 표지 B1을 경고하기 위하여 본 협약 부록1, 구분H에서 정의하는 패널 H1을 포함하는 다른 표지판을 해당표지 설치지점 상류에 설치한다. 표지B2를 경고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B2표지까지의 거리'를 알리는 문양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패널로 보조되는 표지 B1을 설치하여야 한다.¹¹
7. '우선권도로'를 알리는 표지 B3은 우선권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 시 우선권도로가 아닌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선권도로의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하여야 한다는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이 표지는 해당 도로의 시작 지점과 매 교차로 전방 또는 교차로지점에 반복되어 설치될 수 있다. B3 '우선권도로' 표지가 도로에 설치된 경우, 우선권 도로구간이 종료된다는 B4 '우선권종료' 표지가 우선권이 소멸되는 접근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B4 표지는 우선권 도로구간이 소멸되는 지점에 앞서 한 번 이상 반복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B4 표지는 부록 1-1 구분 H에서 지정하는 부가 패널 H1과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8. 교차로에서의 위험정보제공을 위하여 A19 문양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제공할 경우, 혹은 교차로에서 주행도로가 본 조의 7항이 규정하는 B3 표지 적용 시와 같이 '우선권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B1 또는 B2 표지는 해당 도로와 교차하는 타 도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B1 또는 B2 표지를 통한 규정지시가 존재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선권 양보를 하여야 하는 도로, 또는 비포장도로에서도 해당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을 지시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다. B2 표지는 관련 공공기관이 교차로 접근로에서 운전자 시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로 방향을 기준으로 교차로의 한쪽 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11조 금지표지 또는 제한 표지

본 협약 부록1번 C절은 금지표지 및 제한 표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표지의 의미를 규정한다. 또한 금지표지 및 제한 표지로 제공되는 규정이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소멸됨을 알리는 표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12조 의무표지

본 협약의 부록 1번 D절에서는 의무표지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규정한다.

¹⁰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9번 항목 참조

¹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9번 항목 참조

제13조 본 협약 부록 1 구분표지 C, 구분D가 규정하는 표지의 일반적인 설비

1. 금지, 제한 및 의무표지는 그 의무, 제한,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과 가장 근접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하며 만일 관련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반복 설치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공공기관이 시계상의 이유, 또는 운전자에게 앞서 경고하기 위한 이유로 해당 표지판을 의무, 제한, 금지가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상류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 제한, 금지표지가 상류지점에 설치되는 경우, 부록 1-1 구분H에서 규정하는 부가 패널 H를 표지판 하부에 설치하여 해당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동일 구배에서 '도시 심화 구역' 표지판 바로 후방에 규정표지가 설치된 경우는 구역 내 다른 표지로서 기본 규정과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는 도로구간은 제외하고 규정표지로 규정되는 내용이 '도시 심화 구역' 전체에 기본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3. 금지표지나 제한 표지는 해당 표지가 설치된 지점에서부터 이러한 규정과 상이한 내용의 표지가 설치된 지점까지 유효하다. 만일 이러한 상이내용의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교차로까지 그 영역이 제한된다. 만일 금지나 제한의 규정의 공간적 범위가 다음 교차로를 초과하는 경우 자국법규에 따라 해당 표지를 매 교차로에 반복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표지로 제공되는 규정이 지역 내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경우, 본 협약 부록1 구분E 세부구분E 8(a)항에 의거하여 일반표지를 설치한다.
5. 제4항에서 언급하는 지역에서 유출되는 지점에서의 표지는 본 협약 부록1 구분E 세부구분E 제 8(b)항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bis

제13조 둘, 특별 규정표지

1. 본 협약의 부록1 구분E는 특별 규정표지와 그 의미를 제시한다.
2. 도로 사용자에게 표지 E7^a; E7^b; E7표지; E7^d; 그리고 E8^a; E8^b; E8^c 혹은 E8d^e 도시 심화 구역 내에서의 표지 E7^a; E7^b; E7^c; E7에서부터 E8^a; E8^b; E8^c; E8^d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내용을 다른 표지에 의해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운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도시 심화 구역 진입시점에 표지 B3의 설치로 지정되는 우선권도로의 우선권 소멸지점에는 표지 B4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지의 설치에는 제14조 2항,3항, 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¹²
3. 표지 E12^a; E12^b; 혹은 E12^c는 관련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행자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관련 공공기관이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특별 규정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표지들은 반복 설치될 수 있으며, 표지 하부에 부착된 추가 패널은 표지에서부터 표지가 지시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거리는 표지판 내 하단부에 포함될 수 있다.

정보표지

제14조

1. 본 협약 부록1 F절과 G절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표지들의 예와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2. 라틴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제5조 1항(c)의 정보표지(ii)에 자국어 문자와 함께 자국어 발음에 가장 근접하

¹²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9번 항목 bis 참조

- 게 만들어진 라틴문자를 동시에 기입하여야 한다.
3. 라틴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자국어 표기 표지와 동일한 하나의 또는 반복 설치되는 여러 개의 표지에 라틴어를 채택하여 문자를 기입할 수 있다.
 4. 한 개의 표지에 기입되는 언어의 수는 2개 국어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사전방향표지

사전방향표지판은 일반속도 및 표지판 가시거리를 포함한 도로 및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교차로에서부터 설치지점까지 주간과 야간 모두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설치되어야 한다. 이 설치지점까지의 거리는 도시 심화 구역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차량 전용도로 및 기타 도로에서는 500미터 미만일 필요가 없다. 표지는 반복 설치될 수 있다. 해당 표지 아래에 설치된 부가 패널에 해당 표지와 교차점 간의 거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거리는 표지판 내부 하단부에도 기입할 수 있다.

제16조 방향표지

1. 방향표지에는 여러 지역명을 기입할 수 있다. 지역명은 아래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여러 지역명에 비하여 불확실한 지역의 이름은 해당 표지에 기입된 타지역명 표기문자 보다 크게 표기할 수 있다.
2. 표지에 거리가 기입된 경우, 거리를 지시하는 숫자는 지역명과 동일 높이에 기입되어야 한다. 화살표 모양의 방향 표지의 경우, 거리를 지시하는 숫자는 지역명과 화살표의 끝 사이에 기입되어야 한다. 직사각형 모양의 표지에서 거리를 지시하는 숫자는 지역명 뒤, 나란한 위치에 기입되어야 한다.

제17조 도로지정표지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 숫자와 문자의 조합, 혹은 도로이름의 문자로 기입되는 도로지정표지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표지판에 그 숫자와 이름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선분류체계를 가지는 서명국들은 사각형을 노선분류상징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장소확인표지

인접국가간의 국경, 동일국의 두 행정구역, 도시 심화 구역, 강, 산길, 명승지 등에 대한 경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소확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는 본 협약 제13조 구분2, bis 가 규정하는 표지와 구분되며 눈에 잘 띄어야 한다.¹³

제19조 확인표지

담당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의 방향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확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예, 대규모 도시 심화 구역 진출부). 확인표지에는 본 협약 제16조 1항 규정과 같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지역명이 기입될 수 있다. 거리가 표시된 경우,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는 지역명 뒤에 기입되어야 한다.

제20조

SMART TRAFFIC [삭제]
RESEARCH LABORATORY

¹³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0번 항목 참조

제21조 정보표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1. 본 협약 제15조부터 19조에서 규정하는 정보표지는 담당 공공기관이 권장 할만하다고 판단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 외의 정보표지는 제6조 1항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담당 공공기관이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점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F2부터 F7까지의 정보표지는 긴급정비, 재급유, 숙박 및 가벼운 음식에 대한 시설이 드문 지역 도로에 국한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2. 정보표지는 반복 설치될 수 있다. 해당 표지판에서부터 표지판 정보제공 시설물까지의 거리를 표지판 하단부의 부가 패널 또는 표지판 내부 하단부에 기입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3장 교통신호등

제23조 자동차교통에 관한신호

1. 대중교통 전용신호등을 제외한 차량신호등에서 운용되는 등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제 12항에 제약을 받는다.
 - (a) 등화(Non-flashing Light):
 - (i) 녹색등화의 의미는 차량진행의 허용이다. 그러나 만일 앞막힘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음 현시가 시작하는 시점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는 차량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 (ii) 적색등화의 의미는 차량진행의 금지이다. 차량은 정지선을, 만일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위치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적색신호등이 교차로의 가운데 또는 접근로의 반대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량은 해당 교차로 또는 교차로의 보행자 횡단보도를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 (iii) 황색등화는 단독으로 또는 적색등화와 함께 동시 운용(동시등화)된다. 단독 운용되는 황색등화는 정지선 또는 정지선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설치된 위치를 넘어서는 차량의 진행금지를 의미하나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호등이 교차로 중간 또는 접근로의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차로 또는 교차로의 보행자 횡단보도의 차량 진입 금지 의미이나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황색등화가 적색등화와 동시에 운용된 경우에 황색등화의 의미는 곧 신호 전환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나 적색등화에 영향을 받고 있던 차량은 적색등화의 의미를 따른다.
 - (b) 등화의 점멸(Flashing Light) :
 - (i) 적색등화의 점멸(또는 하나의 지지대상에서 동일한 높이와 방향에 설치된 두개의 적색신호가 교대로 점멸하는 경우)의 의미는 정지선 또는 정지선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설치된 위치를 넘는 차량의 진행금지이다.
적색등화의 점멸은 (1) 철도건널목과 (2) 가동교 및 페리보트 선착시설로 접근하는 접근로, (3) 소방차량의 통행이 있을 도로 또는 비행기가 저공비행하며 횡단하는 도로 접근로에서만 운용한다.
 - (ii) 황색등화의 점멸(또는 두개의 황색신호가 교대로 점멸하는 경우)은 차량의 주의진행을 의미한다.
2. 삼색신호시스템에서 신호등은 적색, 황색, 녹색등화 (Non flashing) 신호로 구성된다. 녹색등화는 적색등화와 황색등화와 동시에 운용될 수 없다.
3. 이색신호시스템에서 신호등은 적색, 녹색등화(Non flashing) 신호로 구성된다. 이색신호시스템 신호등 기존 신호등의 대체내용을 규정하는 본 협약 3조 3항에 의거하여 임시 기간동안에 한하여 사용된다.
3. (a) bis 도로표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본 협약 6조 1항, 2항, 3항은 철도건널목 신호를 제외한 모든 차량신호등에 적용된다.
- (b)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은 교차로의 전방, 혹은 교차로 중심부 상부에 설치된다. 해당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반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 (c) 추가로, 가입국은 자국 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규정한다.
- (i) 차량신호등은 차도상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며 설치되어야 하고 차량신호등이 도로변에 설치된 경우 보행자들에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ii) 차량신호등은 차량이 교차로로 접근할 때 먼 거리에서도 쉽게 인지 가능하며 신호등화의 내용이 교차로 도착 전에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한다.
 - (iii) 차량신호등은 각 서명국 영토 내에서 다양한 도로구분과 부합되어 규격화되어야 한다.
4. 본 조 2항과 3항에서 명시한 삼색신호체계와 이색신호체계에서 신호등렌즈는 횡형 또는 종형으로 배열된다.
 5. 신호등렌즈가 종형으로 배열된 경우 적색신호등이 최상부에 배열되며 횡형으로 배열된 경우 적색신호등은 도로상 차량주행방향의 반대방향에 배열한다.
 6. 삼색신호체계에서 황색신호등 렌즈는 중앙에 배열되어야 한다.
 7. 본 조 2항, 3항에 명시된 삼색신호체계와 이색신호체계에서의 신호등의 신호는 원형이어야 한다. 본 조 1항에 명시된 적색등화의 점멸신호 역시 마찬가지로 원형이어야 한다.
 8. 황색등화의 점멸 전용신호는 단독으로 운용될 수 있다. 삼색신호체계가 설치된 장소에서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황색등화의 점멸신호를 운용할 수 있다.
 9. 삼색신호체계에서 적색, 황색, 녹색 신호등은 흑색비탈의 동일색 화살표시 신호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시 등화의 의미는 적색, 황색, 녹색등화의 의미가 동일하나 등화가 가지는 진행금지, 주의진행, 진행허용의 의미는 화살표 지시방향으로 제한된다. 전방으로 차량의 진행금지, 주의진행, 진행허용을 의미하는 화살표시 등화에서의 화살표 방향은 상향이어야 한다. 적색, 황색, 녹색의 배경색에 흑색화살표시가 사용되는 신호로 대체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상기 화살표시신호의 내용과 동일하다.
 10. 적색, 황색, 녹색 신호등과 한 개 이상의 녹색화살표시 신호등이 있는 삼색신호체계에서 녹색화살표시 등화는 현시상태와 관계없이 화살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차량의 진행허용을 의미한다. 차량이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전용차로 또는 차로(항상 차량의 진입을 수용하는 교통류는 추월이 허용되어야 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를 주행하는 경우, 만일 차량이 정지하여 동일차로 후방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화살표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주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녹색화살표시 신호등은 일반 녹색 신호등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11. (a)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세로선 노면표시로 구분되는 차로의 상부에 적색과 녹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적색등화는 적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로로 차량의 진행금지를 의미하며, 녹색등화는 녹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로로 차량의 진행허용을 의미한다. 적색신호등은 적색표 형태이어야 하고 녹색신호등은 하향 녹색화살표시 이어야 한다.
 - (b) 운영측면에서 중간신호 또는 전환신호가 필요한 경우에 황색 또는 백색 하향 대각선 화살표시 등화를 사용한다. 한 개의 신호등으로 좌측 또는 우측방향을 지시하거나 두 개의 신호등을 사용하여 각각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 해당 신호로 등화의 점멸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황색 또는 백색 하향 대각선 화살표시는 해당차로로의 차량진행이 곧 금지로 전환되므로 해당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은 화살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차로변경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14 각주 참조

12. 점멸주기가 긴 얇은 백색신호를 철도건널목의 특정위치 설치규정을 가입국 자국내 법규를 정할 수 있다.
13. 차량신호등이 자전거에만 적용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을 따름을 권장한다. 자전거 모양의 그림을 신호등에 표현하거나 자전거 그림 표지판의 사용과 함께 작은 크기의 신호등을 사용하여 신호등에 대한 운전자의 혼돈을 피한다.

14 유럽합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도입된 추가 항 참조(제11번 항목 참조).

제24조 보행자 전용신호

1. 보행자 신호등에서 신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등화(Non flashing Light)
 - (i) 녹색등화는 보행자의 진행허용을 의미한다.
 - (ii) 황색등화는 보행자의 진행금지를 의미하나 보행자가 이미 차도에 위치한 경우 보행자의 진행허용(차도의 반대편으로)을 의미한다.¹⁵
 - (iii) 적색등화는 보행자의 차도 진입 금지를 의미한다.
 - (b) 등화의 점멸 (Flashing Light) : 녹색등화의 점멸은 보행자의 차도횡단 허용시간이 곧 종료되며 적색등화가 곧 시작됨을 의미한다.
2. 보행자신호로 적·녹의 2색신호체계 사용을 권장한다. 적·황·녹의 3색신호체계를 사용할수 있다. 보행자신호등에서 2개 이상 신호등의 동시등화를 금지한다.¹⁶
3. 보행자신호등은 (적색 상측, 녹색 하측) 종형 배열되어야 한다. 적색신호등은 정지하여 있는 보행자그림이, 녹색신호등은 보행하는 보행자그림이 신호등 렌즈에 표현하는 것을 권장한다.¹⁷
4. 보행자신호등은 운전자가 차량신호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도록 설계되고 배열되어야 한다.
5. 보행자신호등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청각신호 또는 촉각신호로 보조될 수 있다.

제4장 노면표시

제25조

노면표시는 담당 공공기관이 교통규제, 또는 도로 이용자의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설치된다. 노면표시는 단독으로 혹은 의미를 명백히 전달하기위하여 다른 표지 또는 신호와 함께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

제26조

1. 차도에 설치된 세로 실선 노면표시는 차량이 그 선을 통과하거나 걸친 상태로 운전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해당 노면표시가 양방향 교통흐름을 분리하는 경우 차량은 노면표시를 넘어 반대방향의 차도로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두 개의 세로 실선 노면표시의 의미도 이와 동일하다.
2. (a) 차도에 설치된 세로 파선 노면표시는 금지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아래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
 - (i)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차로의 구분, 또는
 - (ii) 실선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 해당 노면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금지내용에 대한 경고, 또는 특정 위험이 존재하는 다른 도로 구간으로의 진입 경고
- (b) 본 조의 (a)(ii)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세로 파선 간의 간격과 파선 길이와의 관계 비율은 (a)(i)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보다 작아야 한다.
- (c) 본 협약 23조 구분 11이 규정하는 역방향 교통류의 흐름을 유도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로의 윤곽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중 파선을 설치할 수 있다.

18 각주 참조

3. 차도에 실선 노면표시가 파선 노면표시와 인접하여 나란히 설치된 경우 운전자는 진행하는 차로와 인접한 노면표시

¹⁵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2번 항목 참조

¹⁶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2번 항목 참조

¹⁷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2번 항목 참조

¹⁸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에 추가된 항 참조(제3번 항목 참조)

의 의미를 고려하며 주행한다. 본 조항을 적용하여 허용된 방식으로 추월하는 차량에게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의 적용을 위하여, 차도 가장자리를 분명히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세로 선, 차도 노상주차 공간을 한정짓는 가로선과 연결되는 세로선, 주정차금지 및 제한을 의미하는 세로 선을 세로 노면표시 선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⁹

제26조 bis

1. 특정 차종의 통행만 허용되는 전용차로 노면표시는 넓은 폭의 차로표시선, 작은 파선 간격 등과 같이 기타 차도에 설치되는 다른 실선 또는 파선 노면표시와 엄격히 구분되는 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일반대중교통 차량만을 처리하기 위한 차로의 경우, “BUS” 또는 “A” 문자 노면표시를 차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차로임을 지시하는 표지는 본 협약 부록1 구분 E에서 규정하는 사각형 모양 또는 본 협약 부록D에서 규정하는 원형 모양이어야 하며, 이 때 원형 모양 표지는 청색바탕에 흰색 버스 문양이 표시되어야 한다. 본 협약 부록2에서 규정하는 28a와 28b은 대중교통차량 전용차로를 위한 노면표시의 예이다.
3. 서명국은 문항1에 규정하고 있는 차로를 기타 차량들이 이용하거나 횡단하는 내용을 국내 법규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제27조

- 1.²⁰ 하나 이상의 차로를 가로지르며 표시되는 노면표시는 본 협약 10조 3항이 규정하는 B2 '정지'표지(운전자가 해당 선 후방으로 정지하여야 하는)를 의미한다. 해당 노면표시는 운전자가 신호등에 의해서, 경찰의 수신호에 의해서, 건물쪽 전방에서 '멈춤'이 요구될 때 운전자가 정지하여야 하는 노면표시 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차도에 “정지” 문자를 노면표시로 B2 표지와 병행하는 노면표시에 앞서서(접근로 상류에) 설치할 수 있다.
2.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 1항에서 지시하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노면표시는 B2 표지가 설치되는 장소에 항상 설치되어야 한다.
- 3.²¹ 본 협약 제10조 2항에 언급된 B1 '양보' 표지에 의하여 통행권이 제어되는 경우, 차량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차로를 가로지르며 파선으로 표시되는 노면표시를 통과하지 못한다. 해당 노면표시 전방에 B1 표지를 상징하는 삼각형 모양의 노면표시를 해당 차로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삼각형의 한쪽 변은 파선 노면표시와 평행한 방향으로, 삼각형의 정점은 교통흐름 진행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보행자 횡단보도의 노면표시를 위하여 차도의 방향과 평행하며 상대적으로 넓은 폭의 줄무늬 선의 적용함을 권장한다.
- 5.²² 차도를 가로지르는 실선 또는 보행자 횡단보도용 노면표시와 혼돈되지 않는 노면표시를 사용하여 자전거 횡단도로의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제28조

1. 표지 정보 또는 표지의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차도 위에 화살 표시, 평행선, 수평 또는 수직 줄무늬, 설명 도로표시를 도로상에 반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노면표시들은 특별히 주차구역 또는 주차경계선 범위의 구분, 주차가 금지된 버스 및 굴절버스 정류장의 구분, 그리고 교차로 도착 이전에 선택(pre-selection)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세로 노면표시 선으로 구분되는 하나 이상의 차로로 구성된 차도에 화살표 노면표시가

¹⁹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3번 항목 참조.

²⁰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4번 항목 참조.

²¹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4번 항목 참조.

²²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4번 항목 참조.

설치된 경우, 운전자는 주행하던 차선에 설치된 노면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보행자 횡단과 관련된 본 협약 제27조 4항을 조건으로, 차도의 일부 또는 차도보다 약간 높은 부분에 설치된 내부가, 실선 또는 파선의 테두리에 수직 사선으로 채워지는 노면표시의 의미는,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차량 진입 금지를 의미하며,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 차량은 해당 구역 진입 시 안전하지 않거나 차도 반대편 교차도로로 회전 진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진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3. 도로변에 설치되는 지그재그 노면표시 선은 그 선이 설치된 구간에서의 주차 금지를 의미한다. 해당 노면표시 선은 '버스' 또는 'A'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표시는 버스 또는 굴절버스 정류장임을 지적할 수 있다.

23 각주 참조

제29조

1. 본 협약 26조와 28조에서 규정된 노면표시는 차도 상에 도색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길에 동일한 의미 및 효력을 적용하며 설치될 수 있다.
- 2.²⁴ 노면표시 도색의 경우, 그 색은 황색 또는 백색이어야 하나 주차허용 또는 주차금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색이 사용될 수 있다. 서명국 영토 내에서 황색과 백색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동일 수준의 노면표시는 동일 색상으로 도색 되어져야 한다. 본 조항을 위하여, 용어 '백색'은 '밝은 은색' 또는 '밝은 회색'의 색상을 포함한다.

25 각주 참조

3. 설명, 문양, 화살표 등의 노면표시를 설치함에 있어, 운전자의 가시 각도가 좁은 경우, 해당노면표시는 차량의 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늘여서 설치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노면표시는 조명상태가 열악한 경우, 조명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밀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반사광택 처리되어야 한다.

제29조 bis

1. 도로공사 또는 우회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구 노면표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영구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색상과 다른 색상의 임시 노면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임시 노면표시는 영구 노면표시에 우선한다. 도로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영구 노면표시와 임시 노면표시가 동시에 존재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 노면표시를 가리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 노면표시는 가급적 재귀 반사식으로 하여야 하며, 교통 유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컨(beacons), 캣츠아이(cats eyes) 또는 반사체(reflectors)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본 협약 부록 2번은 노면표시의 모양 및 설계에 관한 권장 사항이다.



²³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에 추가된 항 참조(제5번 항목 참조)

²⁴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6번 항목 참조.

²⁵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에 추가된 항 참조(제6번 항목 참조)

제5장 기타

제31조 도로공사를 위한 표지판

1. 차도 상 공사구간의 범위는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2.²⁶ 도로 공사구간 및 교통량 수준이 허용한다면, 공사구간의 경계를 적색과 백색, 적색과 황색, 흑색 과 백색 또는 흑색과 황색으로 표시되는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울타리를 설치하여 표시하며, 또 야간에 만일 해당 울타리가 반사 광택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조명시설 또는 반사 부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반사 부가장치 및 조명등 색상은 적색 또는 어두운 황색이어야 하며, 점멸등 등화색은 어두운 황색이어야 한다.
 - (a) 일방으로 주행하는 차량에게 조명 및 시설물로 공사구간을 구분하여 주는 경우, 또는 도로 반대방향 공사구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우, 백색의 조명 및 반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b) 양방으로 주행하는 차량에게 조명 및 시설물로 공사구간을 구분하여 주는 경우, 백색 또는 황색의 조명 및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 조명 또는 반사장치의 표시

각 서명국들은 신호 또는 반사장치로 차도의 바깥 경계선을 표시하는 경우, 모든 영토 내에서 동일한 색상 또는 동일한 색상체계를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²⁷

건널목

제33조

1. (a) ²⁸건널목에서 열차가 접근함을 경고하기 위하여, 또는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이 닫힘을 경고를 위하여 설치되는 신호체계로는 본 협약 제23조 1(b)항이 규정하는 적색 점멸등 또는 적색 점멸등의 교차 등화가 사용되어야 한다.
 - (i) 적색 점멸등은 본 협약 제23조 2항이 규정하는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신호체계로 보완 및 교체될 수 있다. 만일 건물목 근처 도로에 삼색신호등이 설치운영되고 있거나 건물목에 차단문이 설치된 경우, 보완 또는 교체되는 삼색 신호체계에서 녹색 신호등은 운용되지 않는다.
 - (ii) 통행량이 적은 비포장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경우, 음향신호만으로 신호를 운용할 수 있다.
- (b) 모든 경우에 신호등은 음향신호로서 보완될 수 있다.
2. 신호등은 차도의 가장자리에, 차량의 주행방향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신호등의 가시성 또는 교통량 밀도수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호등은 도로의 반대편에 반복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조건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시, 신호등은 차도의 중앙분리대에 또는 차도의 상부에 반복되어 설치될 수 있다.²⁹
3.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열차의 접근을 경고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목에서는 본 협약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B2 '정지'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가 설치된 건물목에서 운전자는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며, 정지선이 없는 경우 접근하는 열차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까지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SMART TRAFFIC
RESEARCH LABORATORY

²⁶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3번 항목 참조

²⁷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4번 항목 참조

²⁸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5번 항목 참조

²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5번 항목 참조

제34조

1. 건널목에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이 설치된 경우, 도로를 가로막는 차단문 또는 반차단문은 어떠한 도로 이용자도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과 가까운 쪽의 문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차단문 또는 반차단문이 도로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본 협약의 제33조 1(a)항에서 규정되는 적색신호등 또는 1항에서 규정하는 음향신호는 어떠한 도로 이용자도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정지선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신호등이 설치된 지점을 넘어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협약 제33조 1(a)(i)항에서 언급되는 삼색신호시스템에서의 황색등화는 어떠한 도로 이용자도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정지선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황색등화 시 이미 표지에 너무 근접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지점을 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지를 넘어서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35조

1. 건널목에 설치된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은 적색과 백색, 적색과 황색, 흑색과 백색, 흑색과 황색의 교대 줄무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형 적색 원형표지판이 문의 중앙에 부착된 경우 백색 또는 황색의 단독색상이 사용될 수 있다.³⁰
2. 건널목의 양면 어느 한 쪽이라도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철로 가까이에서 부록1 구분A에서 규정되는 표지 A 28을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열차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등 또는 B2 정지표지가 설치된 경우, A28 표지가 신호등이 설치된 지주대 또는 B2 표지가 설치된 지주대에 부착되어야 한다. 아래의 지점에서 A28 표지의 설치는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 (a) 철도차량이 느린 속도로 주행하며 철도원이 도로이용 차량에게 수신호를 제공하는 건널목; 또는
 - (b) 교통량이 매우 적은 비포장도로 혹은 보행길(footpath)과 철로가 교차하는 건널목
3. *[삭제]*

제36조

1.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위험 때문에 서명국들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모든 건널목 접근로에 설치되는 위험경고표지는 문양 A25, A26, A27 중 하나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 (i) 도시 심화 구역에 한정되는 특별한 경우.
 - (ii) 비포장도로와 동력구동 차량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드문 경우.
 - (b) 도로 이용자들이 건널목 양면 접근도로에서, 도로이용 차량 운전자가 접근하는 열차를 발견하고, 열차가 최대속도로 주행함을 가정한 상태에서 도로이용 차량이 안전하게 건널목 진입 전에 정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미 건널목에 진입한 차량이 건널목으로 접근하는 열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건널목을 통과하는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널목에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 또는 경고 신호등을 설치한다. 그러나 열차가 낮은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나 이용 교통량이 낮은 건널목의 경우, 서명국은 본 세부구문을 자국내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 (c) 도로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이 운영되는 모든 건널목의 경우, 본 협약 1항 33조의 규정되는 열차의 접근을 경고하는 신호체계 중 하나가 설치되어야 한다.
 - (d) 본 협약 1항 33조에 의거, 모든 건널목은 열차의 접근을 경고하는 자동신호체계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을 설치한다.
 - (e) 그러한 차단문(barriers) 또는 반차단문(half-barriers)의 시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사물질이나 반사장치로 보조되

³⁰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6번 항목 참조

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 또한 야간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건널목에 이르기 전에 반사물질이나 반사장치로 보조되는 위험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

- (f) 가능한 모든 경우에 반차단문이 설치된 건널목의 경우, 접근하는 차량이 반대방향 차량을 위해 마련된 차도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도의 중앙에 세로선 노면표시 또는 방향 분리 도류섬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 제35조 2항 마지막 문장이 규정하는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6장 마지막 규정

제37조

1. 본 협약은 196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된 모든 뉴욕 유엔사령부 회원국들, 특별기구나 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령 당사국과 유엔총회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한 모든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2. 본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한 법률 문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협약은 본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어떤 국가나 조약을 정식 수락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그 수락 문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38조

1. 모든 국가는, 본 협약 가입 서명 또는 비준하는 시기 또는 그 이후의 시기에 본 협약이 책임지는 국제관계에 있는 모든 영토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선언할 수 있다. 본 협약은 사무총장이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후부터, 혹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하기 시작한 날짜로부터 (둘 중 어느 것이든지 나중에 기준으로) 통보 문서를 만든 나라의 영토에 본 협약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으로 선언문을 작성하는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본 협약 제46조 2항이 제시하는 선언이 수행되었음을 자국 영토를 대신하여 알려야 한다.
3.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선언문을 만든 국가는 언제든지 협약이 통지서에 명시된 해당국에서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됨을 그리고 본 협약이 그러한 영토에서 사무국장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사실을 문서로 받은 날부터 1년 이후에 실제 효력이 상실됨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

1. 본 협약은 15개의 비준이나 정식 수락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2. 15개의 비준이나 정식수락문서가 기탁된 이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정식 수락하려는 국가에게는, 당해 국가의 비준이나 정식수락 문서가 기탁된 지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게 된다.

제40조

본 협약이 효력을 발함과 동시에 각 서명국들 간의 관계에서, 1931년 3월 30일에 제네바에서 조인된 도로 신호등의 통일에 관한 협약, 또는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조인된 도로 표지판 및 신호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를 소멸시키고 대체한다.

제41조

1. 본 협약이 일년간 효력을 발한 후, 어느 서명국가든지 협약의 개정안을 하나 혹은 그 이상 제안할 수 있다. 설명하는 적요를 동봉하여 제안하려는 개정안의 본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에 그 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 부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서명국들은 사무총장에게 (a) 제안된 개정안의 수락, 또는 (b) 제

안된 개정안의 거부, 또는 (c) 그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것인지 알려져 한다. 사무총장은 본 협약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제안된 개정안 본문을 발송해야 한다.

2. (a) 앞의 조항에 따라서 통보된 수정안은 만일 12개월 이내에 전체 서명국 1/3 으로부터 사무총장에게 수정안을 거부, 또는 심의를 위한 회의소집 요구가 없는 경우 개정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사무총장은 접수된 각각의 개정안 승인 및 거부내용, 회의소집 요청내용에 대해서 본 협약에 가입한 모든 서명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12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동안에 접수된 거부나 회의소집요구의 전체 숫자가 전체서명국 숫자의 1/3을 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에게 12개월 기간의 종료 6 개월경과 후 개정안 반대 또는 심의회의를 요구한 서명국을 제외한 기타 서명국 영토 내에서 효력을 발하게 됨을 알려야 한다.
- (b) 위 언급된 12개월 동안 제안된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한 서명국은 해당 기간이 지난 후라도 사무총장에게 해당국이 그 개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그 통보를 다른 모든 서명국에게 알려야 한다. 승인을 통보한 서명국내에서 개정안의 효력은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받은 6개월 뒤부터 발휘한다.
3. 만일 개정안이 본 조의 제2항에 따라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 본 조의 제1항에 명시된 12개월 기간동안 전체 서명국 국가 수의 1/2 이하의 국가들이 사무총장에게 거부의를 통보한 경우, 최소한 전체 수의 1/3 이지만 적어도 10 개국이상이 개정안을 수락하거나 심의회의 소집요구를 한 경우, 사무총장은 제안된 수정안 또는 본 조의 제4항에 의거 본인에게 제출될 수 있는 다른 제안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만일 본 조 제3항에 의거 회의가 소집된 경우, 사무총장은 본 협약 제37조 이하에 명시된 모든 국가를 초대하여야 한다. 회의에 초대된 모든 국가들에게 최소 개최 6개월 전에, 개정안에 덧붙여서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제안들을 제출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최소 회의개회 3개월 전에 회의에 초대된 모든 국가들에게 그 제안을 통보해야 한다.
5. (a) 만일 회의에 참석한 국가가 서명국의 2/3 이상이고, 회의 참석서명국들의 2/3 가 개정안을 채택했다면, 개정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들에게 개정안의 채택을 알리고, 자신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는 그 기간동안 사무총장에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서명국들에게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야 한다.
- (b) 1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개정안을 거부한 서명국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을 승인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모든 서명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서명국들로부터 승인확인을 받은 후 6개월 후 또는 사무총장이 개정안의 채택 사실을 회원국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2개월 후 중 나중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해야 한다.
6. 만일 제안된 개정안이 본 조의 제2항에 따라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제3항에 기술되어 있는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 개정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2조

서명국들은 본 협약 가입을 무효함을 사무총장에게 문서상으로 통보할 수 있다. 해당 무효 선언은 사무총장이 당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년 뒤에 효력이 생긴다.

제43조

본 협약은 연속 12개월 동안 가입 서명국이 5개 이하일 경우,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4조

둘 혹은 그 이상의 서명국들 간에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을 둘러싸고 생긴 분쟁이나, 당사국들이 협상이나 기타 화해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관련 서명국들의 요청에 따라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 결정을 회부할 수 있다.

제45조

본 협약의 어떤 부분도 서명국들의 자국내 또는 국제적인 안보 문제로 필요한 경우 유엔헌장의 규정에 상응하는

일련의 행동(action)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1. 본 협약에 조인하거나 비준 혹은 정식 수락 문서를 기탁하려는 경우, 어떤 국가든지 본 협약 44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서명국들은 위의 선언을 한 서명국들과 관련해서는 본 협약 제44조에 제약받지 않는다.
 2. (a) 모든 국가는 비준이나 정식 수락 문서를 기탁하려는 시점에서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다음의 내용을 표명하여야 한다.
 - (i) '제9조1항) A^a와 A^b 중 어느 것을 위험경고표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 (ii) '제10조 3항) B2^a 와 B2^b간에 어느 것을 정지표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모든 국가는 시점과 관계없이 사무총장에게 통보를 통해 규정 내용을 대체하여 바꿀 수 있다.
 - (b) 비준이나 정식 수락 문서를 기탁하려는 시점에서 어느 국가이든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해서 엔진 부착자전거를 오토바이로 취급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어떤 국가이든 차후에 해당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3. 본 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정해지는 규정은 사무총장이 해당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협약이 효력을 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4. 본 제37조 1항이 규정하는 조건 이외에 본 협약과 부록의 조건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공식화되어야 하며, 비준 혹은 정식 수락 법률 문서 기탁 이전의 경우, 법률 문서로 확인 공식화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본 협약 제1조 37항에 의거하여 모든 서명국에게 해당 조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유보조항을 명시하거나 제1항과 4항에 따라서 선언을 한 서명국들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를 해줌으로써 어느 때든지 그것을 철회할 수 있다.
6. 본 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조건 사항은
 - (a) 조건 사항을 단 서명국들에게 그 조건과 관련된 협약의 규정을 조건 수준으로 조정해 준다.
 - (b) 조건 사항을 단 서명국과의 관계에서 타 서명국들에게 동일수준으로 해당 규정을 조정해준다.

제47조

본 협약의 제41조 및 46조에 규정된 선언, 통보 및 전달에 덧붙여서 사무총장은 제37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다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a) 제37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정식수락
- (b) 제8조에 따른 선언
- (c) 제39조에 따른 협약의 효력 시작 날짜
- (d) 제2항과 5항에 따른 협약 수정안의 효력 발생 일자
- (e) 제42조에 따른 무효
- (f) 제43조에 따른 본 협약의 소멸

제48조

한 권에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로 모두 공증된 협약의 원본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유엔사무총장은 본 협약 제37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공인된 원본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증인으로서 아래 기명한 전권대사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한다.

비엔나에서 1968. 11. 8



부록



SMART TRAFFIC
RESEARCH LABORATORY

부록1 도로표지

Section A 위험경고표지

I. 형태

1. A 위험경고 표지의 형태는 Aa 혹은 Ab 이어야 한다. 아래의 28과 29항에서 제시하는 표지 A28, A29를 제외한 내용을 포함하는 부록3에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재설명하였다. 형태 Aa는 한쪽은 수평선, 수평선 반대편 상부에 정점이 위치하는 이등변삼각형의 형태이며 바탕은 백색 또는 황색이고 경계는 적색이어야 한다. 형태 Ab는 수직 마름모 형태의 사각형이며 바탕은 황색이며 경계는 흑색이어야 한다. 만일 문구가 기입되지 않는 경우, 해당 표지에 삽입되는 문양의 색상은 흑색 혹은 어두운 청색이어야 한다.
2. 일반 Aa 형태 표지의 일반적인 크기는 약 0.9 m 이어야 하며, 작은 Aa 형태 표지의 크기는 0.6m 보다 작어서는 아니 된다. 일반 Ab 형태 표지의 일반적인 크기는 약 0.6m 이어야 하며, 작은 Ab 형태 표지의 크기는 대략 0.4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3. 표지 형태 Aa와 Ab의 선택에 관련하여 본 협약 제5조 제2항 그리고 제9조 제1항을 참조한다.

II. 표시의 상징과 사용에 관한 지침

1. 위험한 굴곡, 만곡

곡선부 또는 연속되는 곡선부에 대한 경고는 아래의 문양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표지에 부착하여야 한다.

- (a) 표지 A, 1^a : 좌 곡선부
- (b) 표지 A, 1^b : 우 곡선부
- (c) 표지 A, 1^c : 이중 연속곡선부 혹은 둘 이상의 연속 곡선부, 좌 곡선부 우선
- (d) 표지 A, 1^d : 이중 연속곡선부 혹은 둘 이상의 연속 곡선부, 우 곡선부 우선

2. 위험 하향구배³¹

- (a) 심한 하향 구배에 대한 경고의 용도로 문양 표지 A, 2^a 를 표지 형태 A^a 의 표지와, 또는 문양 표지 A, 2^b 를 표지 형태 A^b 의 표지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b) 표지 A, 2^a 문양의 좌측 지점은 표지의 좌측 지점에 배치하고 표지판 폭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문양의 우측 지점을 연장한다. 표지 A, 2^a 와 표지 A, 2^b 문양에 제시되는 숫자로 구배를 백분율로 표기하며, 이는 비율(1:10)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서명국들은 본 협약의 제5조 2(b)항 규정을 고려하여 표지 A, 2^a 와 표지 A, 2^b 문양 대신에 해당국이 표지 형태 A^a 를 채택한 경우 표지 A, 2^c를, 표지 형태 A^b 를 채택한 경우 표지 A, 2^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되어진다.

3. 가파른 상향구배³²

- (a) 가파른 상향 구배에 대한 경고로 문양 표지 A, 3^a가 표지 형태 A^a 와 함께, 또는 문양 표지 A, 2^b가 표지 형태 A^b 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b) 표지 A, 3^a 문양의 우측 부분은 표지판의 우측 지점에 배치하고 표지판 폭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문양의 좌측 지점을 연장한다. 표지 A, 3^a와 표지 A, 3^b 문양에 제시되는 숫자로 구배를 백분율로 표기하며, 이는 비율(1:10)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

³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7번 항목 참조

³²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7번 항목 참조

나 하향 구배 경고로 문양 표지 A, 2[°]를 채택한 서명국들은 문양 표지 A, 3[°]를 대체하여 문양 표지 A, 3[°]를 채택할 수 있으며, 하향 구배 경고로 문양 표지 A, 2[°]를 채택한 서명국들은 문양 표지 A, 3[°]를 대체하여 문양 표지 A, 3[°]를 채택할 수 있다.

4. 좁은 차도

전방 차도 폭 감소에 대한 경고로는 문양 표지 A, 4a를 사용하거나 표지 A, 4b처럼 도로의 외곽선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흔들다리

- (a) 흔들다리에 대한 경고로 문양 표지 A, 5를 사용한다.
- (b) 본 조 제29항이 규정하는 직사각형 표지 형태 표지 A, 29^a는 문양 표지 A, 5가 설치된 위험경고 표지 하단에 설치될 수 있다. 이는 표지 A, 29^b와 표지 A, 29^c의 표지가 문양 표지 A, 5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흔들다리 지점까지 거리의 약 1/3 지점 또는 2/3 지점에 설치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6. 방파제나 강둑으로 이어지는 길

방파제 또는 강둑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경고로 문양 표지 A, 6를 사용한다.

7.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

- (a) 웅덩이, 위험한 교량, 산마루 또는 차도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경고하기 위하여 문양 표지 A, 7^a를 사용하여야 한다.
- (b) 위험한 교량, 또는 산마루 길에 대한 경고의 경우, 문양 표지 A, 7^a은 문양 표지 A, 7^b로 대체될 수 있다.
- (c) 웅덩이의 경고로서 상징 표지 A, 7^a가 표지 A, 7^c로 대체 가능하다.

8. 위험한 길어깨

- (a) 특별히 길어깨가 위험한 구간에 대한 경고로 문양 표지 A, 8를 사용하여야 한다.
- (b)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9. 미끄러운 도로

전방 도로가 특별히 미끄럽다는 내용의 주의경고표지로 문양 표지 A, 9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자갈이 널린 도로

자갈이 널려있는 도로의 경고를 위하여 표지 형태 Aa와 함께 문양 표지 A, 10a을 사용하거나, 표지 형태 Ab와 함께 문양 표지 A, 10b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낙석

- (a) 낙석의 위험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상에 돌이 수시로 널려있는 도로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 표지 형태 A^a와 함께 문양 표지 A, 11^a을 사용하거나, 표지 형태 A^b와 함께 표지 A, 11^b을 사용하여야 한다.

- (b) 상기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양의 우측은 표지판의 우측 지점을 기준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 (c)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12. 보행자 횡단부³³

- (a) 도로 노면표시 또는 표지 E, 12로 정해지는 보행자 횡단부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 문양 표지 A, 12 (표지 A, 12^a 또는 A, 12^b)를 사용하여야 한다.
- (b)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13. 어린이

- (a) 어린이가 많은 지역(예, 학교 또는 놀이터 출구)의 경고를 위하여 문양 표지 A, 13을 사용하여야 한다.
- (b)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14. 자전거 출현 횡단

- (a) 자전거가 자주 진입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지점의 경고를 위하여 문양 표지 A, 14를 사용하여야 한다.
- (b)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15. 도로를 가로지는 소 떼 및 동물

- (a) 도로를 횡단하는 동물에게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도로구간을 경고하는 경우, 가장 빈번히 출몰하는 동물(야생동물 또는 가축)의 외곽선 문양을 표지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축은 문양 표지 A, 15^a 를, 야생동물은 문양 표지 A, 15^b 를 사용한다.
- (b)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16. 공사

전방에 도로공사구간을 경고하는 경우 문양 A, 15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신호등

- (a) 삼색신호체계로 제어되는 도로구간을 운전자들이 예상하기 어려워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문양 표지 A, 17이 사용되어야 한다. 문양 표지 A, 17 은 표지 A, 17표지 A, 표지 A, 17표지 B, 표지 A, 17c 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본 협약 23 조 4-6항이 규정하는 삼색신호체계에서의 신호등 배열과 관련된 내용이다.
- (b) 이 문양은 경고의미를 제공하는 3색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일반 통행우선권 규정을 따르는 교차로³⁴

- (a) 서명국 내 일반 통행우선권 규정을 따르는 교차로의 경고 표지는 형태 A^a 와 함께 문양 표지 A, 18^a지 A, 또는 표지 형태 A^b 와 함께 문양 표지 A, 18^b가 사용되어야 한다.
- (b) 문양 표지 A, 18^a 와 표지 A, 18^b는 교차로의 형태를 명확히 제시하는 하는 문양 표지 A, 18^c; 표지 A, 18^d; 표지 A, 18^e; 표지 A, 18^f; 표지 A, 18^g 로 대체될 수 있다.

19. 도로 이용자가 양보해야하는 교차로

³³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7번 항목 참조

³⁴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7번 항목 참조

- (a) 도로 이용자가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하는 교차로를 경고하는 표지에는 문양 표지 A, 19^a 가 사용되어야 한다.
- (b) 문양 표지 A, 19a는 교차로의 형태를 명확히 제시하는 하는 문양 표지 A, 19^b; 표지 A, 19^c 로 대체될 수 있다.
- (c) 이러한 문양은 표지 B, 1 또는 표지 B, 2 경고 표지가 설치된 도로, 또는 그러한 경고 표지가 없어도 자국 내 법에 의하여 타 교통류에 우선권을 양보하며 진행하여야 하는 도로구간에 제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표지 B, 3이 설치된 도로에 사용되는 이러한 문양은 예외적인 경우로 정하여 진다.

20. 운전자가 양보해야하는 교차로³⁵

- (a) 만일 양보표지 B, 1이 교차로에 설치된 경우, 해당 접근로에 문양 표지 A, 20이 적용(표지판 설치)되어야 한다.
- (b) 만일 정지표지 B, 2가 교차로에 설치된 경우, 해당 접근로에 표지 B, 2에 상응하는 문양 표지 A, 21^a 또는 표지 A, 21^b가 적용 (표지판 설치) 되어야 한다.
- (c) 본 협약 제10조 6항에 의거하여 이러한 문양들과 함께 사용되는 표지 A^a 를 표지 B, 1 또는 표지 B, 2로 대체할 수 있다.

21.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를 경고하는 경우 문양 표지 A, 22가 사용되어야 한다.

22. 신호교차로³⁶

위 17항에서 규정하는 문양 표지 A, 17을 포함한 표지 A^a 또는 표지 A^b로 상기 18~21항에서 규정하는 표지를 대체할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표지의 부가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

23. 이차선 도로

- (a)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양방 이차선 도로로 운영되는 차도의 상류부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방통행 차도가 운영되는 경우, 해당 운영 상태를 경고하기 위하여 문양 표지 A, 23 이 사용되어야 한다.
- (b) 이 문양을 포함하는 표지는 필요에 따라 해당 도로 구간에 시점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4. 교통 혼잡

- (a) 교통 혼잡 예상구간을 경고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상류부에 문양 표지 A, 24를 사용하여야 한다.
- (b)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25. 차단문이 있는 건널목

차단문 또는 반차단문이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을 경고하는 경우, 문양 표지 A, 25를 사용하여야 한다.

26. 다른 건널목³⁷

기타 건널목을 경고하는 경우, 문양 표지 A, 26^a; A, 26^b; A, 27 중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 광차(tramway line) 교차로

광차노선(tramway line)이 통과하는 교차로의 경고를 위하여 문양 표지 A, 27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교차로는 본 협약 제1장에서 규정하는 건널목이 아니어야 한다.

³⁵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7번 항목 참조

³⁶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7번 항목 참조

³⁷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7번 항목 참조

참조: 도로와 선로 사이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열차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하며 도로교통이 선로 관리자에게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제32항에서 규정하는 표지 A, 32가 사용되어야 한다.

28. 건널목에 접하여 설치되는 표지³⁸

- (a) 본 협약 제35조 2항에 의거하여 표지 A, 28형 표지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표지 A, 28^a; A, 28^b; A, 28^c이다.
- (b) 표지 형태 표지 A, 28^a 과 표지 A, 28^b 는 백색 또는 황색 바탕에 적색 또는 흑색 외곽선이 적용되어야 하며, 표지 형태 표지 A, 28^c는 백색 또는 황색 바탕에 흑색 외곽선이 적용되어야 한다. 표지 형태 표지 A, 28^a에 삽입되는 문자는 흑색이어야 한다. 표지 형태 표지 A, 28^b는 철로선이 두 개 이상일 경우로 그 사용이 제한된다. 표지 A, 28^c가 설치되는 건널목에서의 교차 철로선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철로선의 숫자를 제공하는 부가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 (c) 십자 교차 표지 시설 부속물(arms)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20 m 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만일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 표지판은 높이를 높게 또는 낮게 조절되며 설치될 수 있다.

29. 건널목, 흔들다리 부가 표지

- (a) 본 협약 제9장 5절에서 규정하는 부가 표지는 A, 29^a; A, 29^b; A, 29^c이다. 사선 막대 그림은 차도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기울어져야 한다.
- (b) 건널목 또는 흔들다리 상부에서의 위험경고 부가 표지는 A, 29^a와 표지 A, 29^c의 상단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표지 A, 29^a의 경우와 동일한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30. 비행장

- (a) 이착륙 비행기가 저고도로 비행하는 지역의 경고에는 문양 표지 A, 30 이 사용되어야 한다.
- (b)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31. 옆바람

- (a) 강한 옆바람이 부는 지역의 경고에는 문양 표지 A, 31 이 사용되어야 한다.
- (b)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32. 기타위험

- (a) 본 협약 부록 1~31항과 부록 Section B 에 제시된 내용과 다른 기타 위험이 존재하는 도로구간의 경고에는 문양 표지 A, 32 가 설치될 수 있다.
- (b) 그러나 본 협약 제3조 제1항 (a) (ii)의 내용을 준수하는 문양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서명국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 (c) 표지 A, 32는 열차가 낮은 속도로 진행하고 도로교통은 근무자의 수신호로 제어되는 건널목의 경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³⁸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7번 항목 참조

Section B 우선권 표지

참조: 우선도로에 굴곡이 포함된 교차로의 경우, 해당 교차로를 경고하는 위험경고 표지 또는 우선권 표지의 하부에, 우선도로의 형상을 도식으로 표시한 추가 표지 H, 8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표지는 해당 표지가 교차로에 직접 설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1. 양보 표지³⁹

- (a) '양보표지'는 표지 B, 10이어야 한다. 양보 표지는 한 변이 수평이고, 해당 변의 하부에 반대쪽이 정점으로 구성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어야 한다. 표지의 바탕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테두리는 적색이어야 한다. 이 표지는 문양을 포함하지 않는다.
- (b) 일반 규격 표지 측면의 길이는 약 0.90 m 정도이어야 하며, 소형 규격 표지 측면의 길이는 약 0.60 m 이어야 한다.

2. 정지표지⁴⁰

- (a) '정지표지'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표지 B, 2 이어야 한다.
 - (i) 표지 형태 표지 B, 2^a는 적색 바탕에 영어 혹은 해당 국가 언어로 "정지"라는 문자가 기입된 팔각형 모양이다. 문자의 높이는 적어도 표지판 높이의 1/3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 (ii) 표지 형태 표지 B, 2^b는 백색 또는 황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가 둘러진 원형 모양이다. 정지표지는 어떠한 표기 없이 표지 B, 1을 포함하며, 상부에 큰 활자로 흑색 또는 균청색으로 "정지"라는 문자가 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로 기입된다.
- (b) 일반 규격 표지 B, 2^a의 높이와 일반 규격 표지 B, 2^b의 지름은 약 0.90 m 이어야 하며, 소형규격은 0.60 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c) 표지 B, 2^a와 표지 B, 2^b의 선택에 관한 내용은 본 협약 제10조 제3항과 제5조 제2항을 참조한다.

3. 우선권 도로 표지

- (a) '우선권 도로' 표지는 B, 3 이어야 한다. 표지는 수직으로 기울어진 사각형(마름모) 형태이다. 표지판의 테두리는 흑색이어야 하고, 중앙에 흑색 테두리로 둘러진 백색 또는 옐로우색 사각형이 있어야 한다. 두 사각형 사이의 공간은 백색이어야 한다.
- (b) 일반 규격 표지의 측면은 약 0.50 m 이어야 하고, 소형규격 표지의 측면은 0.35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4. 우선권 종료

우선권 도로구간 종료 표지는 B, 4 이어야 한다. 표지는 앞서 설명된 표지 B, 3에 사각형의 우측 상단 및 좌측 하단과 수직인 흑색 혹은 회색 사각 밴드 또는 흑색 혹은 회색 이중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대향 교통류 통행우선권을 알리는 표지

- (a) 도로구간의 폭이 좁아 앞지르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주간 및 야간 모두 운전자에게 해당 도로구간 시인성이 제공되며, 해당구간 교통류가 신호등 이외의 방법으로 일정 방향으로만 우선권이 제공되는 경우, '대향 교통류 통행우선권' 표지인 표지 B, 5는 통행우선권이 없는 방향의 교통류를 향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지의 의미는 차량이 대향방향 교통흐름을 안전하게 정지시키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좁은 도로구간으로의 차량 진입 금지이다.

³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8번 항목 참조

⁴⁰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8번 항목 참조

- (b) 표지는 백색 또는 황색의 바탕, 적색 테두리를 가지는 원형 모양이어야 한다. 통행우선권이 부여된 도로는 흑색 화살표, 통행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는 적색 화살표로 표시되어야 한다.

6. 대향 교통류를 우선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

- (a)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대향교통 차량에 우선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알리는 경우, 표지 B, 6 을 사용하여야 한다.
- (b) 표지는 청색 바탕의 삼각형 모양이어야 한다. 상측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백색이어야 하며, 그 외의 화살표는 적색이어야 한다.
- (c) 표지 B, 6 이 사용되는 경우, 표지 B, 5 가 대향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위하여 좁은 도로구간의 반대쪽 끝에 설치되어야 한다.

Section C 금지, 제한 표지

I. 일반 문양의 특징

- 금지 및 제한 표지는 원형 모양이어야 하고, 이들 표지가 도시 심화 구역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 지름은 0.60 m 보다 작지 않아야 되고, 도시 심화 구역 내부에 주정차 금지 및 제한 표지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 0.40 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특정 문제로 인하여 표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차량의 주정차 금지 및 제한 표지는 백색, 또는 황색, 또는 청색 바탕에 폭이 넓은 적색 테두리가 둘러져야만 한다. 만일 문양과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 문양과 문구는 흑색이어야 하고, 기울어진 선이 삽입되는 경우, 선은 적색이어야 하며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그려져야 한다.

II. 묘사

- 진입 금지 및 제한⁴¹
 - 모든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진입 금지' 내용의 표지 C, 1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표지 C, 1^a 와 표지 C, 1^b 두 가지 형식이 있다.
 - 양방향 모든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양방향 진입 금지' 내용의 표지 C, 2를 사용하여야 한다.
 - 특정 차량 또는 특정 도로 이용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진입 금지 대상차량 또는 대상 도로 이용자의 외곽선 그림자 문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지 C, 3^a, C, 3^b, C, 3^c, C, 3^d, C, 3^e, C, 3^f, C, 3^g, C, 3^h, C, 3ⁱ, C, 3^j, C, 3^k, C, 3^l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지 C, 3^a "사이드카가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동력 차량 진입 금지"

표지 C, 3^b "오토바이 진입 금지"

표지 C, 3^c "자전거 진입 금지"

표지 C, 3^d "엔진부착자전거 진입 금지"

표지 C, 3^e "화물차량 진입 금지"

자동차 외곽그림자 문양, 또는 표지 C, 3e 하단에 본 협약 8조 4항을 따르는 부가 표지에 밝은 색상으로 기입되는 차량종량 톤수는 차량, 또는 복합차량의 중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표지 C, 3^f "세미 트레일러와 일축 대형 트레일러가 아닌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모든 동력 차량 진입 금지"

트레일러 그림자 문양, 또는 표지 C, 3f 하단에 본 협약 8조 4항을 따르는 부가 표지에 밝은 색상으로

⁴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9번 항목 참조

로 기입되는 트레일러 중량 톤수는 트레일러의 중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서약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양에서 트럭 후미 부분의 외곽 그림자 모양을 승용차 후미 부분 외곽그림자모양으로, 트레일러 외곽그림자모양을 승용차와 연결되는 트레일러 외곽그림자모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지 C, 3^g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모든 동력 차량금지 진입 금지"

트레일러 외곽그림자 문양, 또는 표지 C, 3g 하단에 본 협약 8조 4항을 따르는 부가 표지에 밝은 색상으로 기입되는 트레일러 중량 톤수는 트레일러의 중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표지 C, 3^h "특별표지에 설명된 위험물 적재차량 진입 금지"

특정형태 위험물 수송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경우, 표지 C, 3h 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가 표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가 표지의 적용으로 서명국 국내 법규에 의하여 규정하는 위험물 수송차량의 진입 금지를 의미한다.

표지 C, 3ⁱ "보행자 진입 금지"

표지 C, 3^j "동물수송차량 진입 금지"

표지 C, 3^k "손수레 진입 금지"

표지 C, 3^l "농업용 동력 차량 진입 금지"

참고: 표지 C, 3^a 에서 표지 C, 3^l 까지, 표지에 나타나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은 연결되는 적색 선이 운전자가 문양 의미를 이해하는데 및 표지를 인식하는데 방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적색 선을 생략하거나 해당 선이 문양에서 끊어짐을 금지하는 내용을 서명국이 결정할 수 있다.

- (d) 특정 차량 또는 도로 이용자 집단의 진입 금지 표지는, 각각의 진입 금지 차량 및 도로 이용자 진입 금지 표지를 열거하여 설치하거나, 여러 진입 금지 차량 및 도로 이용자의 외곽그림자 문양을 하나의 표지에 배열하여 설치할 수 있다. 표지 C, 4^a 의 "동력 차량 진입 금지"와 표지 C, 4^b 의 "동력차량 및 동물 수송차량 진입 금지"의 예이다.

두 개 이상의 외곽그림자 문양을 포함하는 표지는 도시 심화 구역 외부에 설치될 수 없으며, 세 개 이상의 외곽그림자 문양을 포함하는 표지는 도시 심화 구역 내부에 설치될 수 없다.

- (e) 중량 및 크기(dimension)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진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는 아래의 표지이어야 한다.

표지 C, 5 "너비 ~m 초과차량 진입 금지"

표지 C, 6 "높이 ~m 초과차량 진입 금지"

표지 C, 7 "전체 중량 ~ton 초과차량 진입 금지"

표지 C, 8 "축별 중량 ~ ton 초과차량 진입 금지"

표지 C, 9 "길이 ~m 초과차량 진입 금지"

- (f) 차량주행 안전거리를 제공하는 표지는 C, 10 이어야 한다.

2. 회전금지

회전(화살표 방향에 따른 좌회전 및 우회전 금지)금지를 알리는 표지는 C, 11a "좌회전 금지"와 표지 C, 11b "우회전 금지" 표지이어야 한다.

3. 유턴 금지

- (a) 유턴의 금지를 알리는 표지는 C, 12 "유턴 금지" 표지이어야 한다.

- (b) 적절한 경우, 문양을 좌우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4. 추월금지⁴²

- (a) 추월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방법에 추가하여, 사이드카를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및 엔진부착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동력 차량 추월금지 내용을 알리는 표지는 C, 13^a “추월금지” 표지이어야 한다.

표지는 C, 13^{aa} 와 C, 13^{ab}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b) 중량이 3.5 ton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기타차량 추월금지를 알리는 표지는 C, 13^b “화물차량 추월금지” 표지이어야 한다.

표지는 C, 13^{ba} 와 C, 13^{bb}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본 협약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표지 하단에 설치되는 부가 표지를 이용하여, 추월을 허용하는 차량의 최대 중량을 달리할 수 있다.

5. 속도제한

- (a) 속도제한 표지는 C, 14 “최대속도제한” 표지이어야 한다. 서명국 내에서 속도를 표지 내부에 나타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주행에 허용되는 최대속도가 기입되어야 한다. 기입되는 속도 뒷부분 또는 하단 부에, Km 또는 M (Mile) 과 같은 속도 단위를 기입할 수 있다.

- (b) 특정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만의 제한속도를 별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 8조 제4항에 의거하여 표지 하단에 설치되는 부가 표지에 해당 중량을 기입하여야 한다.

6. 음향경고장치 사용금지

음향경고장치의 사용이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을 알리는 표지는 C, 15 “음향경고장치 사용금지” 표지이어야 한다. 표지판이 도시 심화 구역 시작 지점 또는 도시 심화 구역을 예고하는 표지 바로 후방지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 부록 H절이 규정하는 부가 표지 H.2번에 금지가 적용되는 구간거리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도시 심화 구역 전역에 걸쳐 음향경고장치 사용금지 내용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표지를 도시 심화 구역 시작 지점에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하며, 도시 심화 구역 시작점에 위치한 도시 심화 구역 표지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서명국 도시 심화 구역 내부에 적용되는 교통규칙이 설치지점에서부터 효과가 발생함을 알려야 하는 것을 권장한다.

7. 정지없는 지속주행금지

- (a) 세관 부근에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함을 알리는 표지는 C, 16 “정지없는 지속주행금지” 표지이어야 한다. 본 협약 제8조 규정이 있음에도, 표지는 “세관”이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는 기급적이면 두 개 언어로 표기될 것을 권장한다. 표지 C, 16을 사용하는 서명국은 해당 글자가 통일된 모양의 표지에, 통일된 언어로 기입될 수 있도록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b) 해당 표지는 다른 이유로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관”이라는 단어는 정지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간결하게 설명하는 다른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8. 금지나 제한의 종료

- (a) 금지표지의 설치 지점에서 발생하는 금지규제의 효력이 종료되는 지점을 주행 차량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는 C, 17a “주행 차량에 부가된 금지규제 종료” 표지이어야 한다. 이 표지는 백색 또는 황색의 원형 모형이어야 한다. 표지는 테두리가 없으며 단지 가장자리가 흑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연결되는 평행한 흑색 혹은 짙은 회색 대각선 줄무늬가 있어야 한다.

⁴²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9번 항목 참조

- (b) 주행차량에 대한 특정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이 표지로 공고된 후, 그러한 규제가 종료되는 지점임을 알리는 표지는 C, 17^b “속도제한 종료”, 또는 표지 C, 17^c “추월금지 종료”, 또는 표지 C, 17^d “화물차량 추월금지 종료”의 표지이어야 한다. 이러한 표지들의 형태 및 규격은 표지 C, 17^a와 유사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금지 또는 제한규제가 종료됨을 알리는 문양은 밝은 회색이어야 한다.
- (c) 본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제8항에서 언급된 표지는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교통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표지 또는 제한표지의 이면에 설치할 수 있다.

9. 주정차 금지 및 제한

- (a) (i) 주차금지가 적용되는 장소는 표지 C, 18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차 및 정차금지가 적용되는 장소는 표지 C, 19 “정차 및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 (ii) 표지 C, 18 은 흑색 또는 황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와 적색의 가로선이 있는 원형 표지로 대체될 수 있다. 이때 적색의 가로선에 가입국 내에서 “주차”를 뜻하는 문자 또는 표의문자가 표기된다.⁴³
- (iii)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를 표지 하단부에 부착되는 부가 표지에 표기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가 이룰 수 있다.
금지가 적용되는 요일, 달, 일시의 표기
표지 C, 18 의 주차금지, 또는 표지 C, 19 표지의 주정차금지로 일정 시간을 초과함을 금지할 경우 일정 시간 표기 예외가 허용된 특정 도로 이용자 표기
- (iv)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주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부가 표지 활용을 대체하여 표지의 적색 원형 하단(내부)에 해당 내용을 기입할 수 있다.
- (b) (i) 도로 반대편에 교대로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 표지 C, 18 을 대체하여 표지 C, 20^a 또는 C, 20^b 가 사용되어야 한다.
- (ii) 홀수 날짜에 표지 C, 20^a, 짝수 날짜에 표지 C, 20^b로 주차금지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전환되는 시점은 서명국 국내 법규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자정일 필요는 없다. 서명국 국내 법규는 일별 교대 주차 이외의 교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일정 기간을 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로마숫자 I, II 를, 매달 1일과 16일을 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1-15 와 16-31을 사용하여야 한다.
- (iii) 표지 C, 19, C, 20^a, C, 20^b 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는 본 협약 제8조 4항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설명으로 보충되는 표지 C, 18을 사용할 수 있다.⁴⁴
- (c) (i)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지는 도로의 축 방향과 수직 또는 약간의 각도 내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 (ii) 모든 주차금지 및 제한은 표지가 설치되는 차도 측만으로 제한된다.
- (iii) 다른 형식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부록 H의 구분2 H2 부가 표지에 금지가 적용되는 구간의 거리의 제시
또는 이 조항의 (c)(v) 항목의 내용에 따라서, 금지의 내용은 표지가 설치된 지점에서 다음 도로 진입지점까지 적용된다.
- (iv) 부록 H절에서 묘사된 부가 표지 H, 3^a 또는 H, 4^a 는 금지표지가 설치되는 지점에서 금지표지 하단에 설치될 수 있다. 부록 H절에서 묘사된 부가 표지 H, 3^b 또는 H, 4^b 는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금지표지 하단에 설치될 수 있다. 부록 H절에서 묘사된 부가 표지 H, 3^c 또는 H, 4^c 로 보조되는 다른 금지표지는 금지규제가 종료되는 지점에 설치될 수 있다. 표지 H, 3은 도로의 축 방향과 나란하게, 표지 H, 4 는 도로의 축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표지 H, 3 이 설치된 경우, 표지에 제시되는 거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금지가 적용되는 거리이다.
- (v)⁴⁵ 만약 금지규제가 다른 도로 진입지점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상기 (c)(iv) 에 기술된 “금지구간 종료” 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지규제가 짧은 거리에서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만족하는 하나의 표지만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적색 원형문양 내부에 금지가 적용되는 구간의 거리를 표기

43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9번 항목 참조

44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9번 항목 참조

45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19번 항목 참조

부가 표지 H, 3 의 부착

- (vi)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장소의 경우, 주차 요금의 지불 및 지불된 요금에 따라 주차미터기가 작동하는 시간 동안에 국한하여 주차가 허용됨이 주차미터기의 존재를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
- (vii) 무료로 일정 시간 동안만 허용되는 주차 장소의 경우, 부가 표지로 보완되는 표지 C, 18의 사용 대신, 차도의 두르는 가로등, 가로수 등의 시설물 약 2m 높이에 청색 띠의 설치, 또는 도로 연석에 띠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D 의무 표지판

I. 일반적인 성격과 문양

1. 본 조 10항 II절에서 규정하는 표지 D, 10을 제외한 모든 의무 표지는 원형 모양이어야 한다. 표지의 직경은 도시 심화 구역 외부의 경우 0.60 m 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도시 심화 구역 내부의 경우 0.40 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직경이 0.30 m 보다 작은 표지도 교통신호등과 연계되는 경우, 또는 교통섬 안전지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2.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표지는 청색으로 하고 기호는 백색 또는 밝은 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는 적색 테두리를 가진 백색으로 하고 기호는 흑색으로 할 수 있다.⁴⁶

II. 묘사

1. 진행하여야만 하는 방향⁴⁷

차량이 진행하여야만 하는 방향, 또는 유일하게 진행이 허용된 방향을 알리는 표지는 적절한 진행방향을 화살표를 이용하여 제시하는 표지 D, 1 “진행하여야만 하는 방향” 표지 중 표지 D, 1a 이어야 한다.

2.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

본 협약 제6조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류섬 또는 차도의 전방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표지 D, 2 “정해진 방향으로 주행”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도류섬 또는 장애물을 피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3. 비신호교차로 회전교차로(Compulsory Roundabout)

표지 D, 3 “비신호교차로 회전교차로” 표지는, 비신호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지시하는 규정을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운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D, 4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는 설치 지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가 시작되는 것과 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해당 도로를 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도로와 차도, 인도, 승마 도로가 동일한 진행 방향으로 나란히 접해있는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은 해당 도로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연진 부착자전거는 상기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서명국 국내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 및 표지 C, 3^o의 문양이 담긴 표지의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로 제한됨.

5. 보행자 전용도로

⁴⁶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0번 항목 참조

⁴⁷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1번 항목 참조

표지 D, 5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는이 설치된 위치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으며, 타 수단을 이용하는 도로 이용자들의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차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승마도로와 동일한 진행 방향으로 나란히 접해있는 경우, 보행자들은 보행자 전용도로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6. 승마 도로

표지 D, 6 “승마 도로” 표지는이 설치된 위치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승마 전용도로임을 승마 기수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수단을 이용하는 도로 이용자들의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승마 도로가 차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동일한 진행 방향으로 나란히 접해있는 경우, 승마 기수는 승마 도로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7. 최저 제한속도

표지 D, 7 “최저 제한속도” 표지는이 설치된 도로의 진입부 진입 차량이 표지에 명시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해당 도로를 주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지에 기입되는 숫자는 서명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차량의 속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 속도이어야 한다. 해당 숫자 다음에 “Km”(kilometers) 또는 “m”(Miles)을 기입할 수 있다.

8. 최저 제한속도 종료

표지 D, 8 “최저 제한속도 종료” 표지는 D, 7 표지에 의하여 정해진 최저 제한속도의 효력이 종료됨을 의미한다. 표지 D, 8 은 표지 D, 7 과 동일하나, 표지의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을 연결하는 적색 사선이 나타나야 한다.

9. 스노우체인 의무착용

표지 D, 9 “스노우체인 의무착용” 표지는이 설치된 도로의 진입부 진입차량 바퀴 중 최소 2개 바퀴에 반드시 스노우체인을 착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10. 위험물 적재차량

표지 D, 10^a; D, 10^b; D, 10^c는 위험물 적재차량이 진행하여야 하는 방향을 알린다.

11. 표지 혼합사용 재정리

D, 4; D, 5 와 D, 6

- 두 종류의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만 진행이 허용되고 나머지 교통수단의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 도로 시작시점에 설치된 의무표지에 도로 이용이 허용된 도로 이용자(교통수단)들의 문양이 표출되어 있어야 한다.
- 하나의 표지가 수직의 선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공간에 서로 다른 문양이 표출되는 경우, 개개의 문양은 문양이 지시하는 교통수단만이 도로의 사용이 허용됨을 의미하며,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는 해당 도로의 사용이 금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로의 양 측면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노면표시로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하나의 표지에 여러 개의 문양이 수직으로 배열되었을 경우, 도로는 문양이 지시하는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의해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양의 순서는 선택사항이다. 그러한 교통수단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주의하여야 할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서명국내 국내 법규에서 해당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표지 D, 11^a와 D, 11^b는 표지 D, 4와 D, 5의 혼합사용 예이다.

Section E 특별규제 표지

I. 일반적 특성과 문양

특별 규제표지는 일반적으로 청색 바탕에 밝은색, 또는 밝은 바탕에 어두운색 문양 또는 설명이 새겨진 정사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이다.

II. 묘사

1. 일차로 또는 다차로에 설치된 규제 또는 위험경고 표지

아래에서 제시된 표지는 동일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다차로 도로에서 세로 노면표시 선으로 구분되는 한 개 이상의 차로에 대한 규제 혹은 위험경고 표지이다. 해당 표지는 대향차량이 사용하는 차로에 대한 규제 및 위험경고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되는 화살표와 함께 규제 또는 위험경고와 관련된 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 (i) 표지 E, 1^a “타 차로를 규제하는 최저 제한속도”
- (ii) 표지 E, 1^b “하나의 차로를 규제하는 최저 제한속도”. 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저속차로를 설치하는 중간 단계로 규제 또는 위험경고 표지가 사용될 수 있다.
- (iii) 표지 E, 1^c “타 차로를 규제하는 제한속도” 원형 표지의 테두리는 적색이어야 하며 문자는 흑색이어야 한다.

2. 버스전용차로 표지

표지 E, 2^a 그리고 E, 2^b는 본 협약 제26조 bis, 제2항이 규정하는 버스전용차로 표지의 예이다.

3. 일방통행 표지

- (a)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도로나 차도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두 개의 다른 일방통행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i) 표지 E, 3^a는 차도의 축과 수직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하며, 표지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이어야 한다.
 - (ii) 표지 E, 3^b는 차도의 축과 거의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판면은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한 가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한다. 표지 E, 3^b의 화살표에는 해당 국가의 국어 또는 그 중 하나의 국어로 “일방통행”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⁴⁸
- (b) 표지 E, 3^a 와 표지 E, 3^b 표지는 도로 진입부에 금지표지 또는 의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될 수 있다.

4. 선택예고(Preselection)표지

표지 E, 4 표지는 다차로 도로 교차로에서 앞서서 설치되는 선택예고 표지의 예이다.

5. 차량 전용도로 진출입부 안내표지

- (a) 표지 E, 5^a “차량 전용도로” 표지는 차량 전용도로의 특정 규제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⁴⁹ 각주 참조

- (b) 표지 E, 5^b “차량 전용도로 종점” 표지는 해당 규제가 종료되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 (c) 표지 E, 5^b는 차량 전용도로가 끝남을 경고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두 표지 간의 거리 또는 차량 전용도로

⁴⁸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2번 항목 참조

⁴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도입된 추가 호(sub-paragraph) 참조(제22번 항목 참조).

중점을 알리는 문자가 표지 내부 하단에 기입되어야 한다.

- (d) 이러한 표지의 바탕은 청색 또는 녹색이어야 한다.

6. 차량 전용도로에서와 유사한 교통규제가 적용되는 도로구간 진출입부 안내표지

- (a) 표지 E, 6^a “차량을 위한 도로” 표지는 차량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차량만의 운행이 허용되며, 도로변 용지에 별도의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도로에서, 특별한 교통규제가 시작 적용되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차량이 도로변 용지 진입이 허용됨을 알리기 위하여 부가 패널이 표지 E, 6^a 하단에 설치될 수 있다.

50 각주 참조

- (b) 표지 E, 16^b “차량을 위한 도로 종료” 표지는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도로구간이 종료됨을 경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표지 판이 설치된 위치와 도로구간 종료 지점 간의 거리가 표지 내부 하단에 기입될 수 있다.
- (c) 이러한 표지의 바탕은 청색 또는 녹색이어야 한다.

7. 공사구간 시작 및 종료 표지⁵¹

- (a) 공사구간 시작 지점을 지시하는 표지는 공사구간 명칭, 또는 공사 구간임을 알리는 외곽그림자 문양,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혼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표지 E, 7^a; E, 7^b; E, 7^c와 E, 7^d는 공사 구간 시작 지점을 지시하는 표지의 예이다.
- (b) 공사구간을 지시하는 표지는 공사구간 시작 지점을 지시하는 표지와 동일하나, 표지의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을 연결하는 하나의 적색선 혹은 이중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표지 E, 8^a; E, 8^b; E, 8^c; E, 8^d는 공사 구간 종료 지점을 지시하는 표지의 예이다.

본 협약 제1조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지는 공사구간을 알리는 표지의 후면에 설치될 수 있다.

- (c) 공사구간을 알리는 표지는 본 협약 제13조 bis 제2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8. 구역표지

- (a) 구역의 시작

- (i) 일정구역 내의 모든 도로에 유효한 표지임을 알리기 위하여, 표지는 사각형모양이어야 하며 바탕은 밝은색이어야 한다. “구역”이라는 단어,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서명국 언어를 별도의 표지에 기입하여 표지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할 수 있다. 표지의 하단부에 규제, 금지 혹은 의무의 상세내용을 별도의 표지 또는 부가 표지에 기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일정 구역 내의 모든 도로에 유효한 표지는 해당구역을 접근하는 모든 도로 진입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지가 설치되는 해당 구역은 유사한 성질의 도로들로 구성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 (ii) 표지 E, 9^a; E, 9^b; E, 9^c; E, 9^d는 일정구역 내의 모든 도로에 유효한 표지의 예이다.

표지 E, 9^a - 주차금지구역

표지 E, 9^b - 일정시간대 주차금지구역

표지 E, 9^c - 주차 허용구역

표지 E, 9^d - 최대제한속도구역

- (b) 구역의 종료

- (i) 모든 도로에 규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일정구역을 벗어남을 알리기 위한 표지는 ‘구역의 시작’ 표지와 동일하여야 하

50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도입된 추가 호(sub-paragraph) 참조(제22번 항목 참조).

51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2번 항목 참조

나, 표지는 밝은색 바탕이어야 하며 어두운 회색 사각형이어야 한다. 표지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을 연결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색 또는 흑색 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지는 해당 구역을 진출하는 모든 도로 진출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 (ii) E, 10^a; E, 10^c; E, 10^d 는 구역 내 모든 도로에 표지가 적용되는 해당 구역의 종료 지점을 알리는 표지의 예이다.

표지 E, 10^a - 주차금지구역 종료

표지 E, 10^b - 시차제 주차금지구역 종료

표지 E, 10^c - 주차허용구역 종료

표지 E, 10^d - 최대제한속도구역 종료

9.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터널 진입 및 출입 표지

- (a) 표지 E, 11^a "터널" 표지는 터널로 접근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지 설치지점에서 특별규정 적용이 시작되는 터널시점까지의 거리를 표지 내부 하단에 기입하거나, 또는 본 부록 제 H장에서 규정하는 부가 표지 H, 1에 기입하여야 한다.

터널 명칭 및 터널 길이에 대한 정보도 표지의 내부에 기입 될 수 있다.

- (b) 표지 E, 11^b "터널종료" 표지는 상기 특별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되는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10. 보행자 횡단보도 표지⁵²

- (a) 표지 E, 12^a "보행자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 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를 알려주는데 사용된다. 표지의 바탕은 칙색 또는 흑색, 삼각형은 백색 또는 황색, 문양은 흑색 또는 청색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문양은 표지 A, 12 이어야 한다.

- (b) 오각형모양의 표지 E, 12^b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양을, 표지 E, 12^c는 어두운 바탕에 백색 문양을 사용할 수 있다.

11. 병원표지

- (a) 병원표지는 의료시설 부근에서 특별히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 운행을 하여야 함을 알린다. 병원표지는 E, 13^a 또는 E, 13^b 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b) 표지 E, 13^b 의 적색 십자기는 제 F장 제 II절 제1항이 규정하는 문양 중 하나로 교체될 수 있다.

12. 주차표지

- (a) 도로의 축과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는 표지 E, 14^a "주차" 표지는 해당 지점에 주차가 허용됨을 알린다. 표지는 사각형 모양이어야 한다.⁵³ 해당 표지에는 가입국에서 사용되는 "주차" 문자 또는 표의문자가 기입 되어야 한다. 표지의 배경은 청색 이어야 한다.

- (b) 주차면이 배열되어 있는 방향 및 주차허용 차종에 관련된 내용을 표지 내부 또는 표지 하단의 부가 표지에 기입 할 수 있다. 주차 허용시간을 알리는 내용 또는 "+ 표지" 뒤에 기입되는 문자 또는 문양으로 표시되는 종류의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주차장으로부터 용이함을 알리는 내용을 기입할 수 있다.

표지 E, 14^b와 E, 14^c 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을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되는 표지의 예이다.

⁵²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2번 항목 참조

⁵³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2번 항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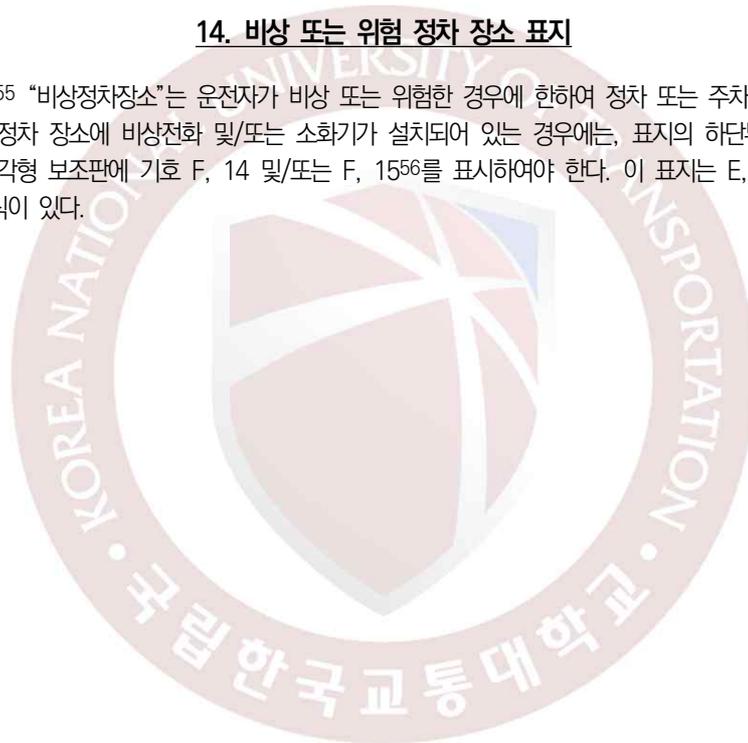
13. 버스정류장 또는 광차선로(tramway) 정류장 표지

표지 E, 15 “버스정류장”과 표지 E, 16 “광차선로 정류장”

54 각주 참조

14. 비상 또는 위험 정차 장소 표지

표지 E, 18⁵⁵ “비상정차장소”는 운전자가 비상 또는 위험한 경우에 한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한다. 해당 정차 장소에 비상전화 및/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지의 하단부 또는 표지 아래에 설치되는 직사각형 보조판에 기호 F, 14 및/또는 F, 15⁵⁶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지는 E, 18^a ⁵⁷ 및 E, 18^b ⁵⁸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54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도입된 추가 항 참조(제22번 항목 참조).

55 정정문서 ECE/TRANS/WP.1/2003/3/Rev.4/Corr.1 참조. 이전 부여 번호는 E, 17

56 각주 63과 64 참조

57 정정문서 ECE/TRANS/WP.1/2003/3/Rev.4/Corr.1 참조. 이전 부여 번호는 E, 17^a

58 정정문서 ECE/TRANS/WP.1/2003/3/Rev.4/Corr.1 참조. 이전 부여 번호는 E, 17^b

Section F 정보, 편의시설, 서비스 표지

I. 일반 특성과 문양

1. “F” 표지의 바탕은 청색 또는 녹색이어야 한다. 표지는 문양이 부착되는 백색 또는 황색 직사각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표지 하단의 청색 또는 녹색의 두꺼운 선 위에 시설물 또는 시설물로 접근하는 인접도로까지의 거리를 백색으로 기입할 수 있다. 표지 F,5 문양을 부착하는 표지는, “호텔” 또는 “모텔”의 단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입될 수 있다. 표지는 시설물로 접근하는 도로 진입로에 반복설치될 수 있으며, 표지 아래에 청색 또는 녹색 바탕에 백색 방향지시 화살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문양은 흑색 또는 어두운 청색이어야 하나, 문양 F, 1^a; F, 1^b; F, 1^c 는 적색이어야 한다.

II. 묘사

1. “응급치료소” 문양⁵⁹

서명국 응급치료소 문양이 사용되어야 한다. 문양은 적색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양의 예는 표지 F,1^a; F,1^b; F,1^c다.

2. 기타 상징

표지 F, 2	“고장서비스”
표지 F, 3	“전화”
표지 F, 4	“주유소”
표지 F, 5	“호텔 또는 모텔”
표지 F, 6	“식당”
표지 F, 7	“휴게실이나 간이식당”
표지 F, 8	“소풍장소”
표지 F, 9	“도보기점”
표지 F, 10	“캠프장”
표지 F, 11	“이동 주택지”
표지 F, 12	“캠프 및 이동 주택지”
표지 F, 13	“유스 호스텔”
표지 F, 14 ⁶⁰	각주 참조
표지 F, 15 ⁶¹	각주 참조
표지 F, 16 ⁶²	각주 참조
표지 F, 17 ⁶³	“비상전화”
표지 F, 18 ⁶⁴	“소화기”
65	각주 참조

⁵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3번 항목 참조

⁶⁰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3번 항목 참조

⁶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3번 항목 참조

⁶²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3번 항목 참조

⁶³ 정정문서 ECE/TRANS/WP.1/2003/3/Rev.4/Corr.1 참조. 이전 부여 번호는 F, 14

⁶⁴ 정정문서 ECE/TRANS/WP.1/2003/3/Rev.4/Corr.1 참조. 이전 부여 번호는 F, 15

Section G

방향, 위치 지시 표지

I. 일반특성과 문양

1. 정보표지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이나, 방향지시 표지는 수평방향으로 길며 종료부분이 화살표 모양인 직사각형 모양일 수 있다.
2. 정보표지는 어두운 색상 배경에 백색 혹은 밝은 색상 문양 또는 문자를, 백색 또는 밝은 색상 배경에 어두운 색상 문양 또는 문자이어야 한다. 적색은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나 서명국 내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차량 전용도로 또는 차량 전용도로로 간주되는 도로에 설치되는 방향지시 표지 및 방향지시 예고표지는 녹색 또는 청색 배경에 백색의 문양 또는 문자가 사용되어야 한다. 표지 E, 5^a 와 표지 E, 6^a 에 문양은 소형으로 축소되어 사용될 수 있다.
4. 임시적인 상황에서 제시되는 공사, 분기, 우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에는 주황색 또는 황색 배경에 흑색 문양 또는 문자가 사용될 수 있다.
5. 표지 G,1; G,4; G,5; 표지 G,6; G,10 는 서명국 언어 또는 지역 언어로 지역 명칭을 기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II. 방향지시 예고 표지

1. 일반적 경우

방향지시 예고표지의 예는 표지 G, 1a; G, 1b; G, 1c 다.

2. 특수한 경우

- (a) “직진도로 없음”에 대한 방향지시 표지의 예는 표지 G, 2^a 와 표지 G, 2^b 이다.⁶⁶
- (b) 전방 좌회전 금지 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따라 가야하는 노선을 알리는 방향지시 예고표지의 예는 표지 G, 3 이다.

참조: 노선의 특성 또는 교통조건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표지에 설치되는 문양들을 표지 G, 1 방향지시 예고표지에 부착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의 예는 표지 A, 3; A, 5; C, 3^e; C, 6; E, 5^a; F,2 다.

III. 방향표지

1. 장소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의 예는 표지 G, 4^a; G, 4^c; G, 4^d; G, 5 다.⁶⁷
2. 비행장으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의 예는 표지 G, 6^a; G, 6^b; G, 6^c 다.⁶⁸
3. 표지 G, 7 는 캠프장으로의 방향을 나타낸다.
4. 표지 G, 8 는 유스호스텔로의 방향을 나타낸다.
5.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위치의 방향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표지의 예는 표지 G, 9^a; 표지 G, 9^b 다. 표지에 대중교통의 종류를 문자 또는 문양으로 기입할 수 있다.

⁶⁵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도입된 추가 문안 참조(제23번 항목 참조).

⁶⁶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4번 항목 참조

⁶⁷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5번 항목 참조

⁶⁸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5번 항목 참조

참조: 방향표지 G, 4; G, 5; G, 6 에 기타 다른 표지에서 노선특성 또는 교통조건을 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양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의 예는 표지 A, 3; A, 5; C, 3^e; C, 6; E, 5^a; F, 2 다.

IV. 확인표지

표지 G, 10 은 확인표지의 예이다.

본 협약 제6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대항방향 진행 차량을 위하여 표지의 후면에 부착될 수 있다.

V. 지시표지

1. 차로수 및 차로방향 지시표지

표지 G,11표지 A, 표지 G,11표지 B, 표지 G,11c 와 같은 표지는 운전자에게 차로의 수와 차로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표지에는 차로수와 동일 수의 화살표가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여 진행차량 이용차로를 지정할 수 있다.

2. 차로막힘표지

표지 G, 11^a; G, 11^b; G, 11^c 와 같은 표지는 운전자들에게 해당 차로가 곧 막힘을 지시한다.

3. 직진도로 없음 표지⁶⁹

표지 G, 13 는 도로 진입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직진 도로가 없음을 의미한다.

4. 일반 제한속도 표지

표지 G, 14 "일반 제한속도" 표지는 특별히 국경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국경을 넘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제한속도를 알리기 위함이 목적이다. 국가명 또는 국가를 구분하는 표지가 일반 제한속도 표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해당 국가의 일반 속도제한을 알리는 표지는 (1) 공사구간, (2) 공사구간 이외 구간, (3) 차량 전용도로의 순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표지 E, 6^a "차량을 위한 도로" 표지가 차량을 위한 도로에 적용되는 일반 제한속도를 알리기 위하여 설치될 수 있다.

표지 테두리와 상단부분은 청색이어야 한다. 서명국 국가명과 세 개 정사각형은 백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표지 상단과 정사각형의 중심에 부착되는 문양은 흑색이어야 하며, 특히 중심부 정사각형에 부착되는 문양은 적색 실선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어야 한다.

5. 도로개방 또는 폐쇄 표지

- (a) 표지 G, 15 "도로개방 또는 폐쇄" 표지는 산악에 설치된 도로가 개방되어 있는지 또는 폐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표지는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진입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해당 도로구간의 이름은 백색으로 기입 되어야 한다. "풀카"라고 명칭된 표지를 예로 제시한다.

표지 1, 2, 3은 제거가능(removable)하여야 한다.

- (b) 만일 도로구간이 폐쇄되었으면 1번 표지는 적색이어야 하며, 표지에 "폐쇄"라는 단어가 기입 되어야 한다. 만일 도로구간이 개방되었으면 1번 표지는 녹색이어야 하며, 표지에 "개방"이라는 단어가 기입 되어야 한다. 단어는 백색이어야 하며, 가급적 다양한 언어로 표지에 기입 하는 것을 권장한다.

- (c) 표지 2와 표지 3은 백색 바탕이어야 하며 흑색 글씨와 문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⁶⁹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 부록 제26번 항목 참조

도로 개방의 경우, 표지 3은 아무내용을 담지 않아야 한다. 도로 개방의 경우, 도로의 상태에 따라 표지 2에 아무 내용도 담지 않거나 표지 D, 9 “스노우체인 의무사용” 문양, 또는 표지 G, 16 “스노우타이어 또는 스노우체인 장착권장” 문양을 부착하여야 한다.

해당 문양은 흑색이어야 한다.

도로폐쇄의 경우, 표지3은 도로가 개방되는 지점까지의 지점명칭이 기입되어야 하며 표지2는 도로상황에 따라 “조 건부 개방”의 문구, 또는 문양 표지 G,16, 또는 표지 D, 9를 포함하여야 한다.

6. 권장속도(Advisory Speed) 표지

주변상황이 허용되며 주행 차종이 최저제한속도로 주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지 G, 17 “권장속도” 표지로 주행 권장속도를 운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표지에 기입되는 속도 또는 속도범위는 서명국 내에서 통용되는 속도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러한 속도 단위를 표지에 기입한다.

7. 중차량 권장여정(Advisory Itinerary) 표지

표지 G, 18 “중차량 권장여정” 표지

8. 탈출차로 표지

표지 G, 19 “탈출차로” 표지는 급격한 하향구배 도로에서의 탈출차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탈출차로까지의 거리를 제시하는 부가 표지와 함께 설치되는 이러한 표지는 A, 3 과 함께 도로의 위험 구간이 시작되는 급격한 하향구배 시작 지점과 탈출차로 진입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하향 구간의 길이에 따라, 표지는 필요한 경우 거리지시 부가 표지와 함께 반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문양은 해당도로에서 탈출차로가 위치한 지점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9. 보행자 육교 및 지하도 표지

- (a) 표지 G, 20 표지는 계단이 있는 보행자 육교 또는 지하도 표지이다.
- (b) 표지 G, 21 표지는 계단이 없는 보행자 육교 또는 지하도 표지이다. 보행자 문양을 장애자 문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 차량 전용도로 유출 표지

표지 G,22^a; G,22^b; G,22^c 는 차량 전용도로 유출표지의 예이다. 이러한 표지에는 차량 전용도로상에서 유출표지까지의 거리가 기입되어야 한다. 서명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차량 전용도로에서, 하나의 사선이 표시되는 표지는 1/3 위치에, 두개 사선이 표시되는 표지는 2/3 위치에, 세 개의 사선이 표시되는 표지는 차량 전용도로 유출지점에 설치한다.

Section H 부가 표지

1. 부가 표지는 백색 또는 황색바탕에 흑색, 짙은 청색, 또는 적색 테두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는 흑색이나 짙은 녹색 바탕에 백색, 황색 또는 적색 테두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거리 또는 길이 정보가 백색 또는 황색으로 기입한다.

70 각주 참조

2. (a) 부가 표지 H, 1는 표지 설치지점으로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위험구간 또는 위험지역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b) 부가 표지 H, 2는 규제가 적용되는 위험구간 및 위험지역의 길이를 나타낸다.
(c) 부가 패널은 표지판 하단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A^b 위험경고표지의 경우, 부가 표지에 기입되는 정보가 표지 내부 하단에 기입될 수 있다.
3. 주차금지 또는 주차제한 부가 표지 H, 3^a; H,3^b 는 H,3^a; H,3b; H,3^c; H,4^a; H,4^b; H,4^c 의 모형이다. (본 부록 제 C장 9(c) 참조)
4. 규제표지는 특정 도로 이용자를 구분하는 문양을 사용하여 특정 도로 이용자를 제한하며 해당 규제를 제한할 수 있다. H, 5^a 와 H, 5^b가 그 예이다.

특정 도로 이용자를 제외하며 적용되는 규제표지판의 경우, 제외되는 특정 도로 이용자를 구분하는 문양과 “제외”를 의미하는 서명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표지 H, 6 이 예이다. 필요한 경우, 표지의 문양은 문자(서명국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5. 장애인용 주차면을 표시하기 위하여 H, 7 표지와 함께 표지 C, 18 또는 표지 E, 14가 사용되어야 한다.
6. 부가 표지 H, 8 은 교차로를 나타내며, 이때 굵은 선은 주방향 도로를, 얇은 선은 표지 B, 1 또는 표지 B, 2가 설치된 부방향 도로를 나타낸다.
7. 전방에 눈이나 얼음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구간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부가 표지 H, 9 가 사용되어야 한다.

부록 I 전체에 해당하는 참조: 도로의 좌측으로 차량이 진행되는 국가의 경우, 모든 표지 및 문양은 적절한 형태로 좌우가 바뀌어야 한다.



⁷⁰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의 부록에 도입된 추가 항 참조(제27번 항목 참조).

부록 2 노면표시

1장 일반 사항

1. 노면표시에는 미끄럽지 않은 물질이 사용되어야 하고, 차도 평면으로부터 6 m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면표시 용도로 사용되는 표지병 또는 비슷한 시설물은 차도 평면으로부터 1.50 c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반사등이 설치된 표지병의 경우 2.5 c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장치들은 도로안전필요수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장 세로 노면표시

A 규격

- 2.71 세로 노면표시로 사용되는 실선 또는 파선의 폭은 최소 0.10 m 이어야 한다.
3. 두 개의 세로 노면표시(double line)간의 측간 간격은 0.10 ~ 0.18m 이어야 한다.
4. 파선 노면표시는 균등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일 길이의 단선들로 구성된다. 도로구간 또는 해당구역에서의 차량주행속도가 파선길이 및 파선간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 5.72 도시 심화 구역 외부지역에서의 파선은 2~10 m 길이가 되어야 한다. 본 부록 제23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로 노면표시 선을 표시하는 파선의 길이는 파선간격의 2~3 배 이어야 한다.
- 6.73 도시 심화 구역 내에서의 파선길이와 파선간격은 도시 심화 구역 외에서의 파선길이와 파선간격보다 적어야 한다. 파선간격은 1 m 까지 줄여질 수 있다. 그러나 교통흐름이 빠른 주요 도시부 간선도로에 설치되는 세로 노면표시의 특성은 도시 심화 구역 외부지역 기준과 동일할 수 있다.

B 차로표시⁷⁴

7. 차로는 파선, 실선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i) 도시 심화 구역 외부지역
 8. 2차로 양방향도로에서 차도의 중앙선은 세로 노면표시로 구분되어야 한다.⁷⁵ 이러한 표시는 일반적으로 파선으로 구성된다. 실선은 오직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9.76 가시성이 확보된 3차로 도로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선 노면표시를 사용하여 차로를 구분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실선 또는 실선과 근접하는 파선이 사용될 수 있다.
 - 10.77 3차로 이상 차도의 경우, 중앙차로 교통진행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 또는 두개의 실선을 사용하여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여야 한다. 추가로 차로는 파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그림 1a 와 1b).
 - (ii) 도시 심화 구역 내부
 - 11.78 도시 심화 구역 내에서 본 부록 8~10항에서 제시하는 권장내용들은 양방향도로 및 최소 2차로 일반통행도로에 적용된다.

79 각주 참조

- 71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 72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 73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 74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 75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 76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 77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 78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12. 도로 폭이 연석, 섬, 도류섬에 의하여 좁아지는 경우, 차로 노면표시가 설치되어야 한다.
13. 2대 이상의 차량 동시진행이 가능한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된 주 교차로(교통류가 제어되는 교차로)로 접근하는 접근로의 경우, 차로 노면표시는 그림 2번, 그림 3번⁸⁰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차선은 화살표 노면표시로 보조될 수 있다 (본 부록 제39항 참조)

81 각주 참조

C. 특수상황 노면표시

(i) 실선의 사용

14.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특정 교차로(그림 4번)에서의 파선 중앙선은 실선(그림 5번 및 그림 6번)으로 대체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⁸²
- 15.⁸³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언덕, 굽은 도로 등) 대향차량이 사용하는 차도 일부분에 대한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도로의 폭이 좁고 다른 도로의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 7a~16 이 규정하는 규격에 따라 실선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해당구간(시인성이 최소 정지시거 M 보다 적음)을 규제하여야 한다⁸⁴. 자동차설계기준이 부합되는 서명국은 그림 7a~10a에서 규정하는 높이가 1 m 를 1.20 m 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 16.⁸⁵ 도로상황에 따라 최소정지시거 M은 달라진다. 각각 2차로도로 및 3차로도로를 위하여 제시된 그림 7표지 A, 7표지 B, 8표지 A, 8표지 B, 8표지 C, 8d는 운전자의 가시거리에 영향을 받는 언덕지역에서의 차로설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그림들은 상기 규정된 세로 노면표시 선 및 아래 제24항에서 규정하는 최소정지시거 (M)에 부합한다. 지점 A(또는 지점 D)는 정지시거가 M 이하로 떨어지는 지점이나, 지점 C(또는 지점 B)는 정지시거가 M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⁸⁶.
- 17.⁸⁷ 구간 AB와 구간 CD가 겹쳐지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언덕정상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주행 양방향의 정지시거가 M을 초과하는 경우, 노면표시 선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파선과 실선이 겹쳐져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9, 그림10a와 그림 10b에 제시하였다.
- 18.⁸⁸ 그림 11a 와 그림 11b 는 정지시거가 한정되는 2차로도로 곡선부에서의 노면표시 선 위치를 나타낸다.
- 19.⁸⁹ 3차로도로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를 그림 8표지 A, 8표지 B, 8표지 C, 8d 또는 그림 10 표지 A, 10b에 제시하였다. 그림 8a(또는 8표지 B, 또는 10a)는 주로 이륜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에 사용될 수 있고, 그림 8c 및 8d(또는 10b)는 주로 사륜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1c 는 동일한 상황에서 정지시거가 한정되는 3차로도로 곡선부의 경우에 해당하는 노면표시 선의 설계를 보여준다.
- 20.⁹⁰ 그림 12, 13, 14 는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79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에 추가된 항목 참조(제7번 항목 참조).

80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81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에 추가된 항목 참조(제7번 항목 참조).

82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83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84 이 항에서 규정하는 정지시거의 범위는 차도표면 1 m 상부에 위치한 물체로부터 차도표면으로부터 1 m 상부에 위치한 관측자 눈높이까지의 거리이다.

85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86 도해 7a 및 7b에 표시된 A와 D 사이의 노면표시는, 그 옆에 점선 없이 단일 연속 중앙선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앞에는 최소 세 개의 획으로 구성된 점선 중앙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간소화된 배열은 시야가 충분함에도 일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추월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히 적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노선 또는 동일 지역 내 동일 유형의 노선에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7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88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89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90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 21.⁹¹ 그림 8표지 A, 8표지 B, 8표지 C, 8표지 D, 10표지 A, 10,b 에서 중앙선과 연결되는 사선 기울기의 경사는 1/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차도 폭의 변화를 지시하는 그림 13, 14 와 노면표시 실선을 굽어지게 만드는 방해물을 지시하는 그림 15, 16, 17의 경우, 노면표시 선의 경사는 가급적 차량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 1/50 이하이어야 하며, 시속 50 km 를 초과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한다.⁹² 추가로, 기울어진 노면표시 실선은 차도의 도로중앙선 과 평행한 실선에 연결되어야 하고, 실선의 길이는 차량의 주행속도로 1초 동안 주행할 수 있는 길이이어야 한다.
- 23.⁹³ 일반적인 도로구간에서 파선으로 차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 차량 일반 주행속도에 따라 최소 50 m 거리를 두고, 접근로 노면표시 파선은 실선에 연결되어야 한다. 파선으로 구분되는 일반 도로구간에서의 차로는 차량 일반 주행속도에 따라 최소 50 m 거리를 두고, 접근로 노면표시 선은 실선에 연결되어야 한다. 노면표시는 운전자가 어떤 차로를 이용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화살표 노면표시로 보완될 수 있다.
- (ii) 실선 사용조건
24. 실선 노면표시 사용여부 판단에 사용되는 정지시거 및 차선길이의 선택은 타협해야 할 사항이다. 아래 도표는 다양한 접근속도에 대한 정지시거(M)의 제안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⁹⁴

접근속도	M값 범위
100 km/h (60 m.p.h)	160 m ~ 320 m
80 km/h (50 m.p.h)	130 m ~ 260 m
65 km/h (40 m.p.h)	90 m ~ 180 m
50 km/h (30 m.p.h)	60 m ~ 120 m

25. 상기 도표에 제시되지 않은 속도의 경우 정지시거 M을 추정 계산한다.
- D. 차도경계 노면표시
26. 차도의 경계는 가급적으로 실선 노면표시로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표지병, 돌출시설물 또는 반사등이 차도경계 노 면표시와 연계되어 설치될 수 있다.⁹⁵
- E. 장애물 노면표시
- 27.⁹⁶ 그림 15, 16, 17 은 차도에 위치한 도류섬 또는 기타 장애물 주변에 사용되는 노면표시를 보여준다.



⁹¹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⁹²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⁹³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⁹⁴ 이 계산에 사용되어진 접근속도는 85%의 주행차량이 초과하지 않는 속도이며, 만일 설계속도가 해당속도보다 높은 경우, 설계속도이다.

⁹⁵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에 추가된 항목 참조(제7번 항목 참조).

⁹⁶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F. 회전차량유도 노면표시

28.⁹⁷ 도로 우측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국가의 경우, 특정교차로에서 좌회전 운전자를 유도하는 노면표시, 또는 도로 좌측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국가의 경우, 우회전 운전자를 유도하는 노면표시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G. 특정차종전용차로 노면표시

28. bis 특정차종 전용차로 선은 차선폭을 넓게 하고 차선간격을 좁게 하여 차도에 사용되는 다른 실선 및 파선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BUS” 혹은 “A” 라는 노면표시가 전용차로 시점 및 교차로 후방차로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림 28a와 28b는 일반 대중교통차량 전용차로 노면표시의 예이다.



⁹⁷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3장 가로 노면표시

A. 일반

29. 운전자가 차도에 설치된 노면표시를 바라보는 각도 때문에 가로노면표시는 세로 노면표시보다 더 넓어야 한다.

B. 정지선

30. 정지선의 최소 폭은 0.20 m 이고 최대 0.60 m 이며 0.30 m 폭이 권장된다.⁹⁸

31. 정지표지와 연계되어 사용될 경우,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지 않고 정지하였을 때, 다른 교차로 접근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가시성이 가장 좋게 확보되는 지점에 정지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32.⁹⁹ 정지선은 세로의 노면표시 선(그림 18과 19번)으로 보완될 수 있다. 정지선은 차도에 “정지”라는 단어를 표시하여 그림 20, 21 에 제시된 예처럼 보완될 수 있다. “정지” 표시 상부에서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2~25 m 사이이어야 한다.

C. 운전자 양보가 요구되는 선

33.¹⁰⁰ 이러한 노면표시 선 최소 폭은 0.20 m 이며 최대 폭은 0.60 m 이다. 두 개의 선이 설치된 경우, 두 선간의 간격은 적어도 0.30 m 이어야 한다. 해당 노면표시 선은 양보를 하여야 하는 운전자를 향해서 정점이 위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노면표시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삼각형 노면표시의 밑변은 최소 0.40 m, 최대 0.60 m 이고, 높이는 최소 0.6 m, 최대 0.70 m 이어야 한다.

34. 가로노면표시는 본 부록 제31항에 규정된 정지선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여야 한다.

35.¹⁰¹ 위 34항에 언급된 노면표시는 그림 22 에서 제시된 예처럼 삼각형 노면표시를 차도에 표시하여 보완될 수 있다. 삼각형 노면표시의 밑변과 가로노면표시간의 거리는 2~25m 이어야 한다. 삼각형 노면표시 밑변은 적어도 1 m 이어야 하며, 높이는 밑변길이의 3 배이어야 한다.

36. 이 가로노면표시는 세로 노면표시로 보완될 수 있다.

D. 보행자 횡단보도

37.¹⁰² 보행자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선들의 간격은, 최소한 이들 선의 폭과 동일하여야 하며, 최대한 해당 폭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간격과 하나의 선을 합한 폭은 1.0 ~1.4 m 이어야 한다. 보행자 횡단보도 최소 권장 폭은, 제한속도가 시속 60 km/h 인 도로의 경우 2.5 m 이며, 제한속도가 이를 초과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는 4 m 이다.

E. 자전거 횡단도로

38.¹⁰³ 자전거 횡단도로는 두 개의 파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파선은 (0.40~0.60) × (0.40~0.60) m 정사각형으로 구성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사각형간의 거리는 0.40~60 m 이어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로의 폭은 1.80 m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표지병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SMART TRAFFIC
RESEARCH LABORATORY

⁹⁸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⁹⁹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¹⁰⁰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¹⁰¹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¹⁰²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¹⁰³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4장 기타 표식

A. 화살표 노면표시

39.¹⁰⁴ 교차로로 접근하는 차량들을 다 수의 차로로 충분히 수용하는 폭을 확보하는 도로에서, 교통흐름이 사용하여야 하는 지정차로의 지정을 차도표면에 화살표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림 2, 3, 19, 23) 화살표 노면표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화살표의 길이는 2 m 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차도에 문자 노면표시와 함께 화살표 노면표시가 보완될 수 있다.

B. 사선평행 노면표시

40.¹⁰⁵ 그림 24, 25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의 예이다.

C. 문자 노면표시

41. 차도에 설치되는 문자 노면표시는 차량규제 또는 도로 이용자들의 유도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용되는 단어는 가급적 지역명칭, 고속도로 번호, 또는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이어야 한다(예: 정지, 버스, 택시 등).

42.¹⁰⁶ 글자는 주행하는 운전자가 표지를 가독할 수 있는 각이 작기 때문에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야 한다(그림 20).

43.¹⁰⁷ 차량의 접근주행속도가 시속 50 km 이상인 지점은, 글자의 높이는 적어도 2.5 m 이상이어야 한다.

D. 정차 및 주차규제

44. 정차 및 주차규제는 연석 또는 차도에 노면표시로 표시될 수 있다. 주차공간범위는 도로표면에 적절한 노면표시 선을 설치하여 나타낼 수 있다.

E. 차도 노면표시 및 인접구조물 표시

(i) 주차제한 표시

45.¹⁰⁸ 그림 26은 지그재그선의 예를 나타낸다.

(ii) 장애물 표시

46.¹⁰⁹ 그림 27은 장애물에 설치되는 표시의 예를 나타낸다.



¹⁰⁴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¹⁰⁵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¹⁰⁶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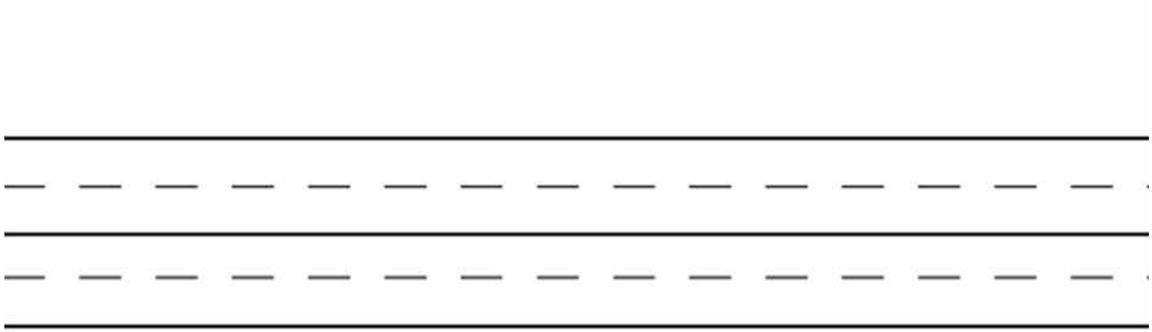
¹⁰⁷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¹⁰⁸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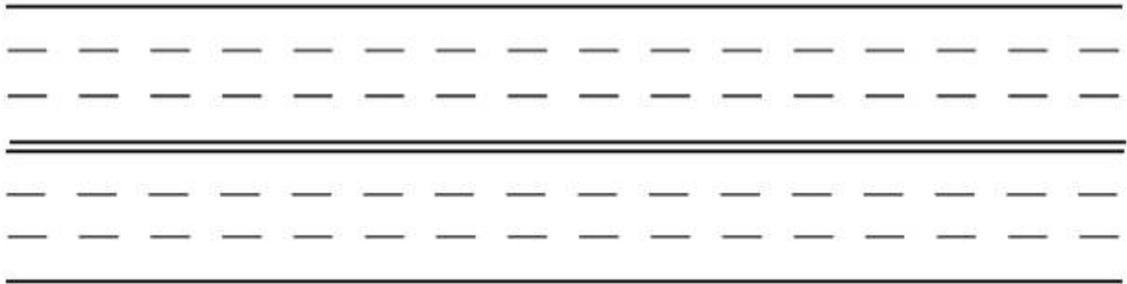
¹⁰⁹ 도로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Road Markings) 부록 제7번 항목 참조.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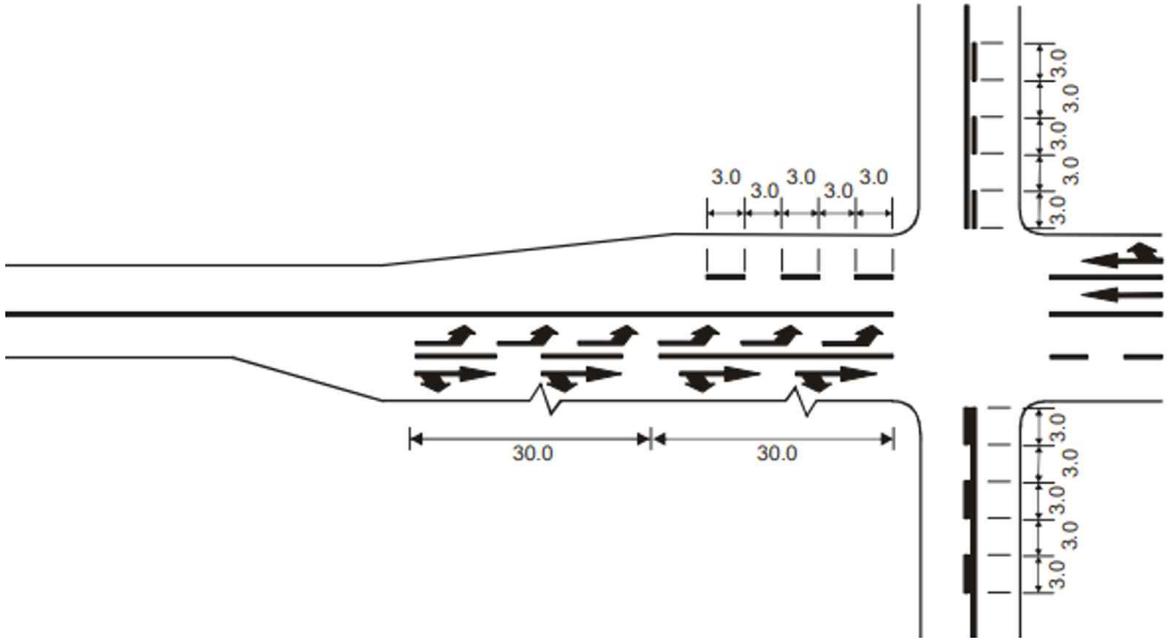
부록 2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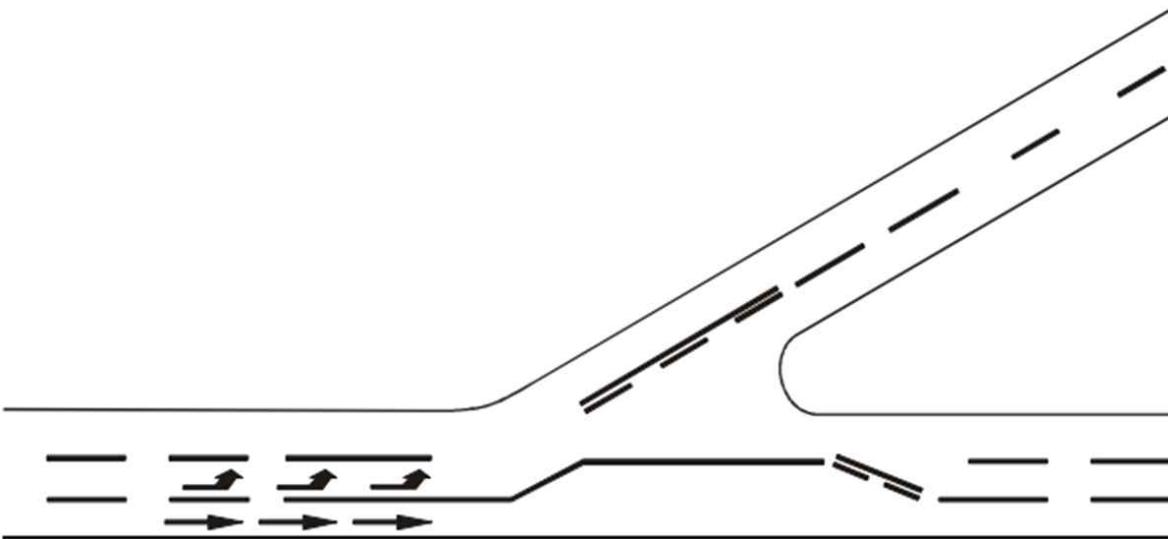
<그림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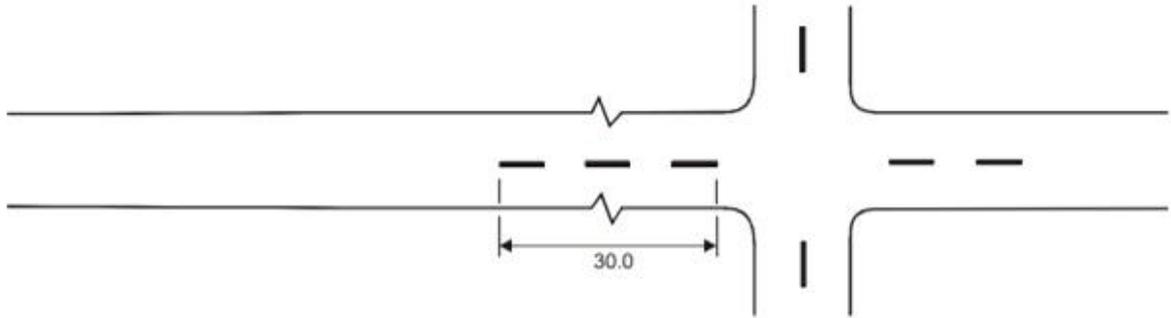
<그림 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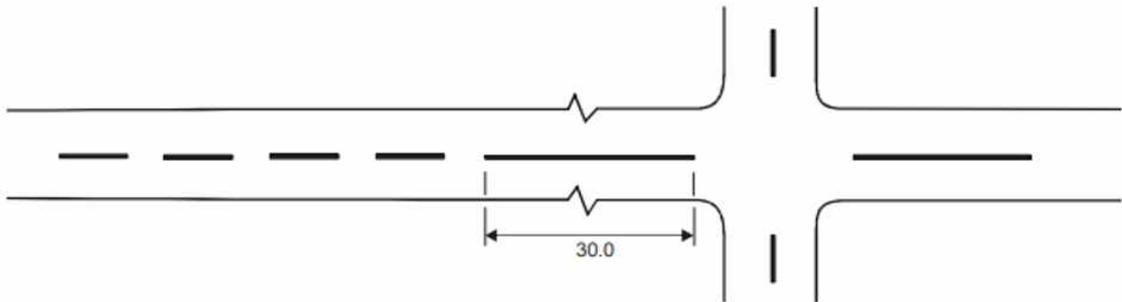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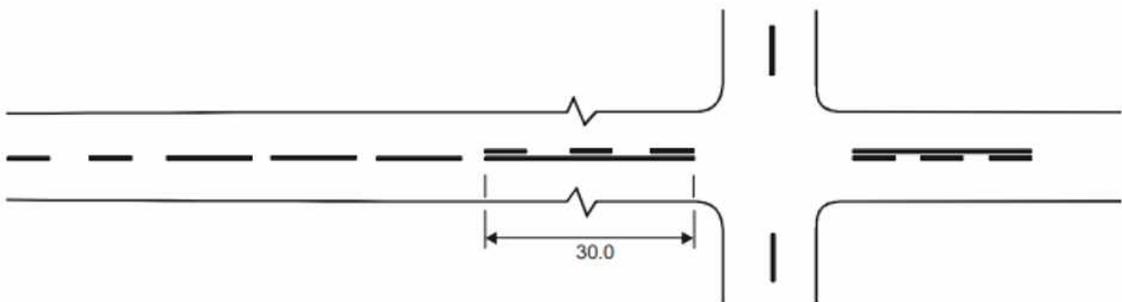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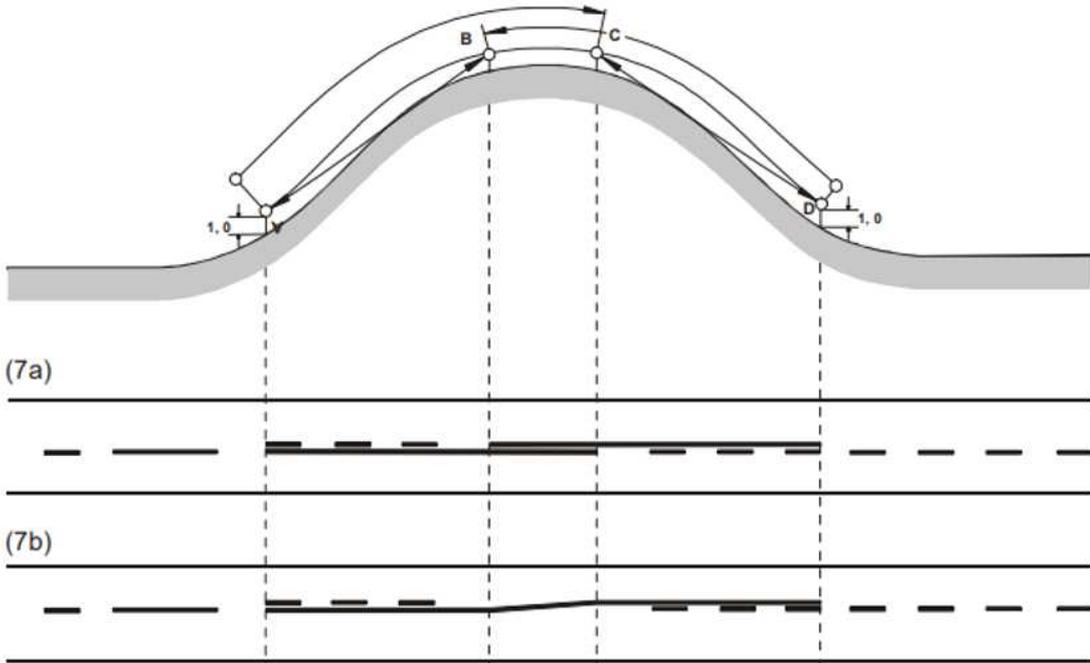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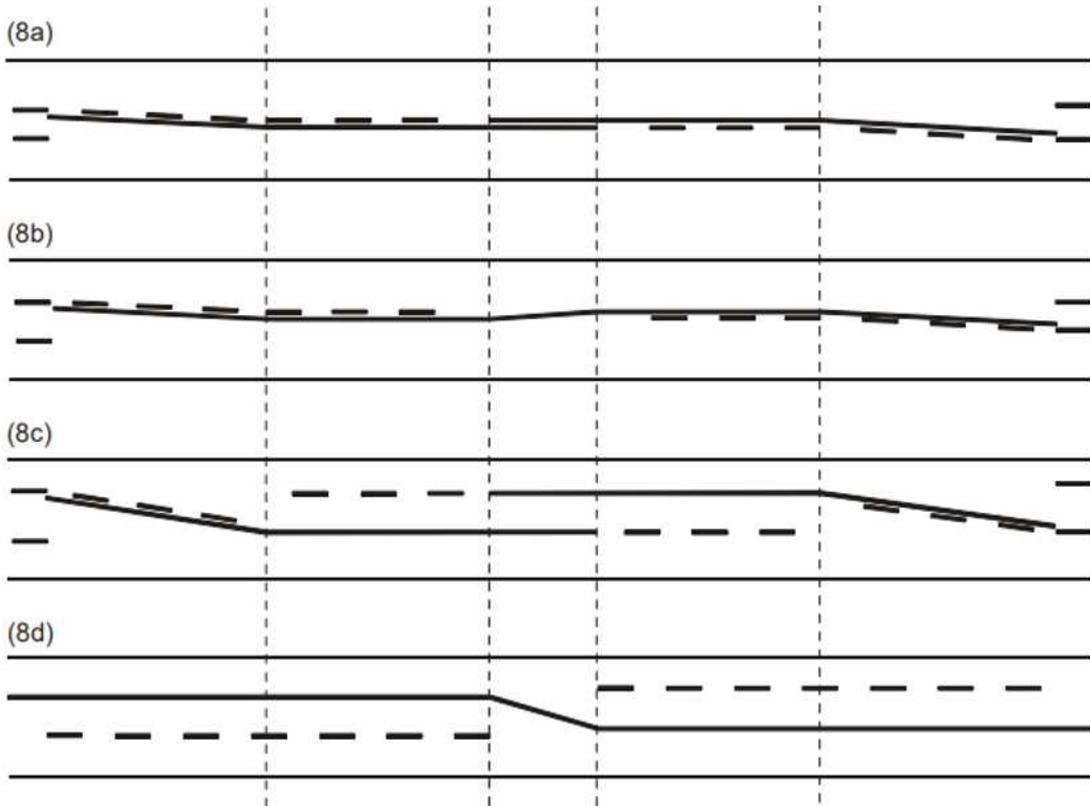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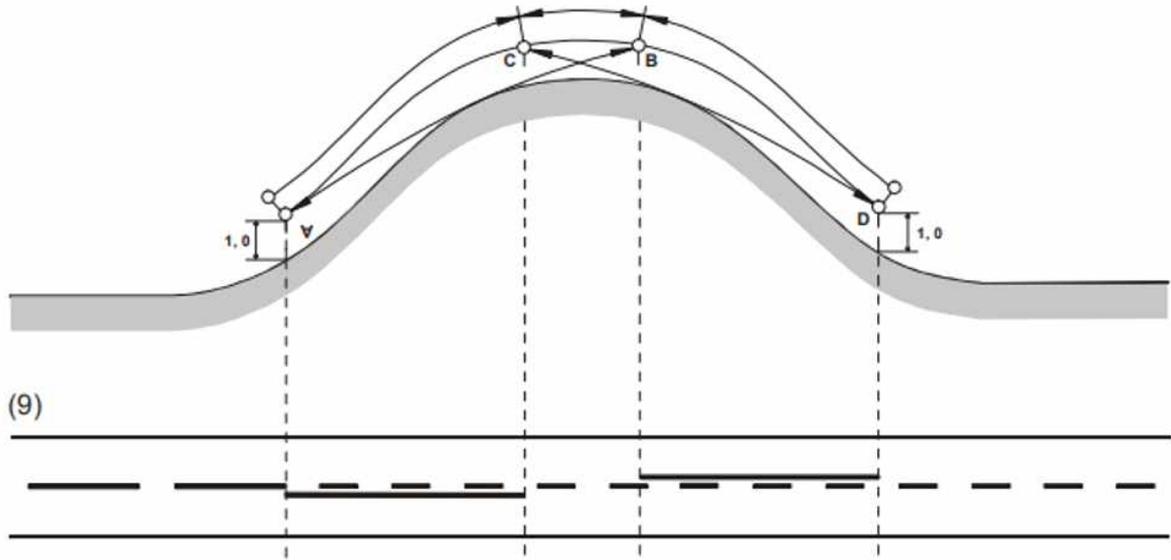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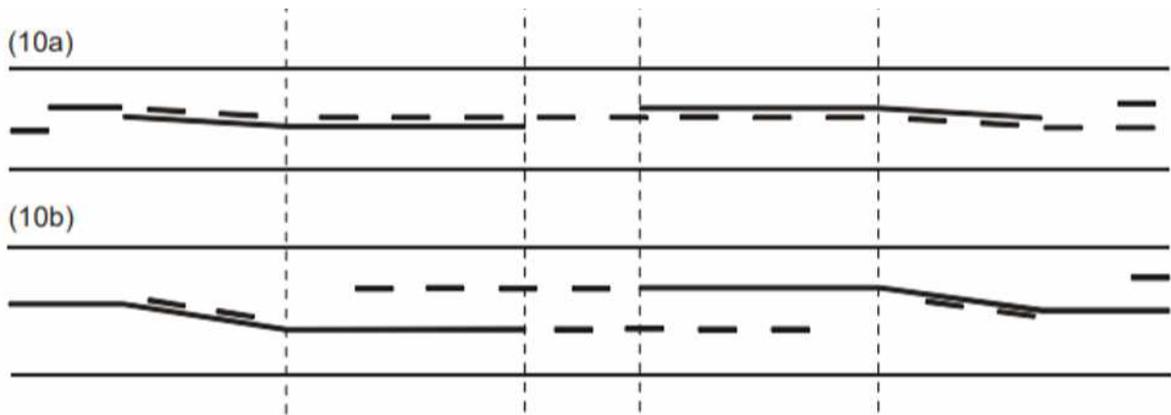
<그림 7a ~ 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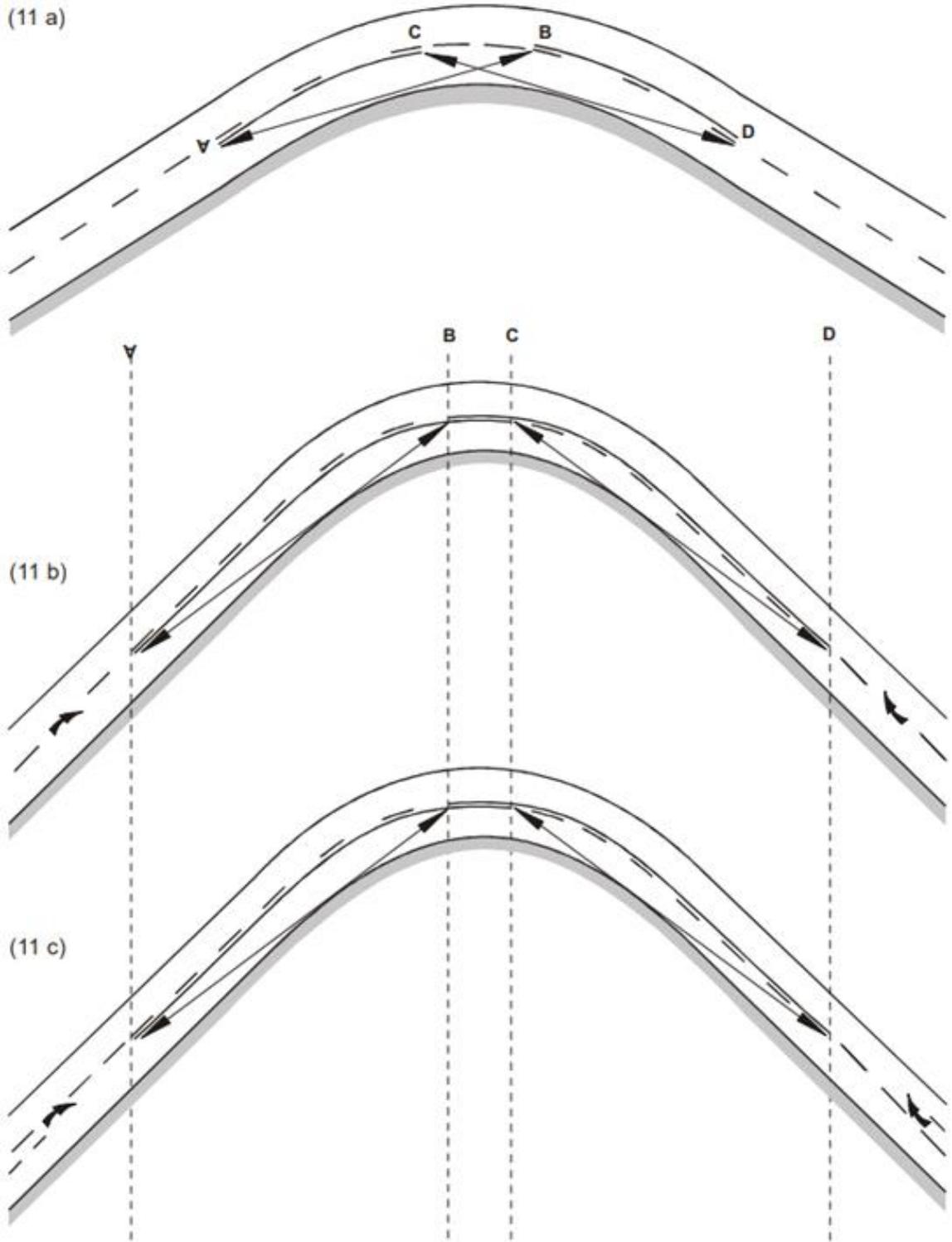
<그림 8a ~ 8d>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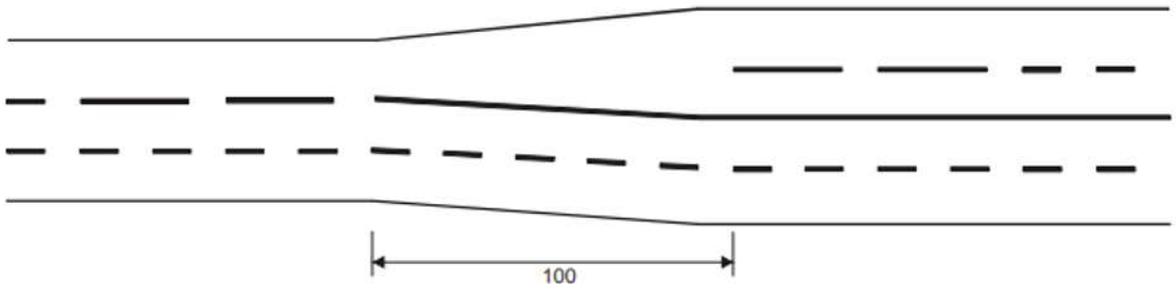
<그림 10a ~ 1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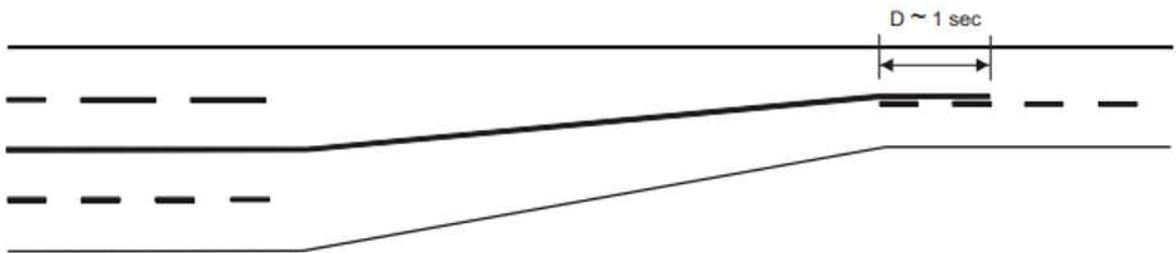
〈그림 11a ~ 1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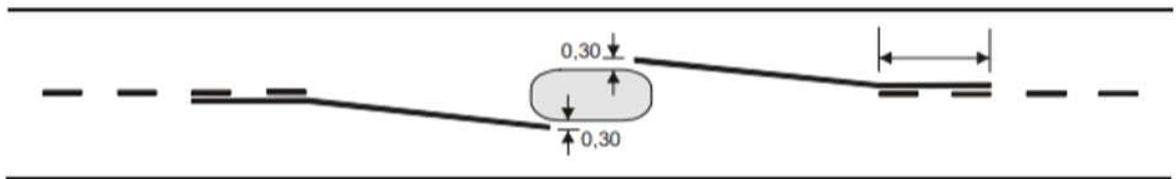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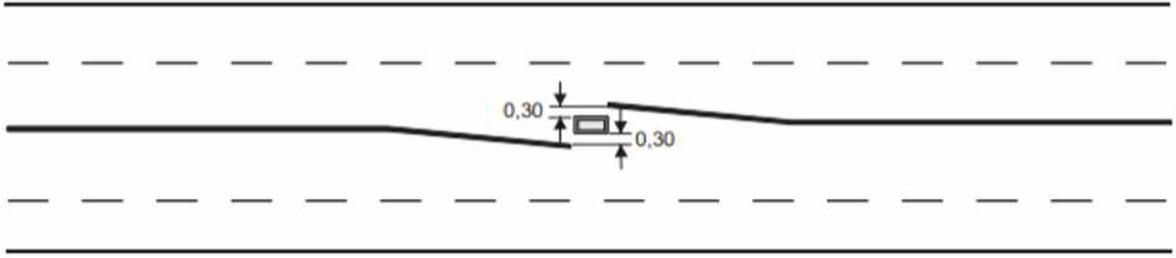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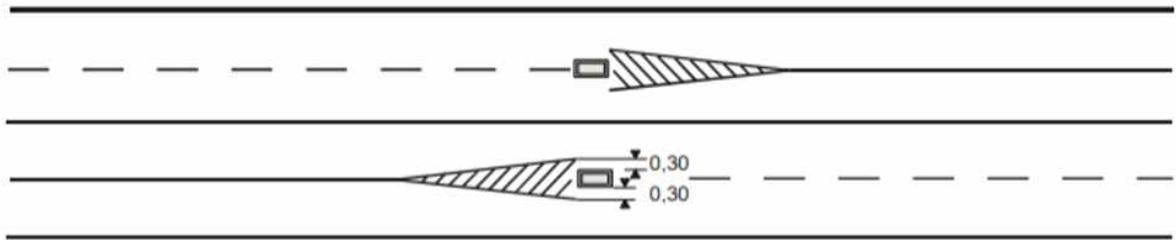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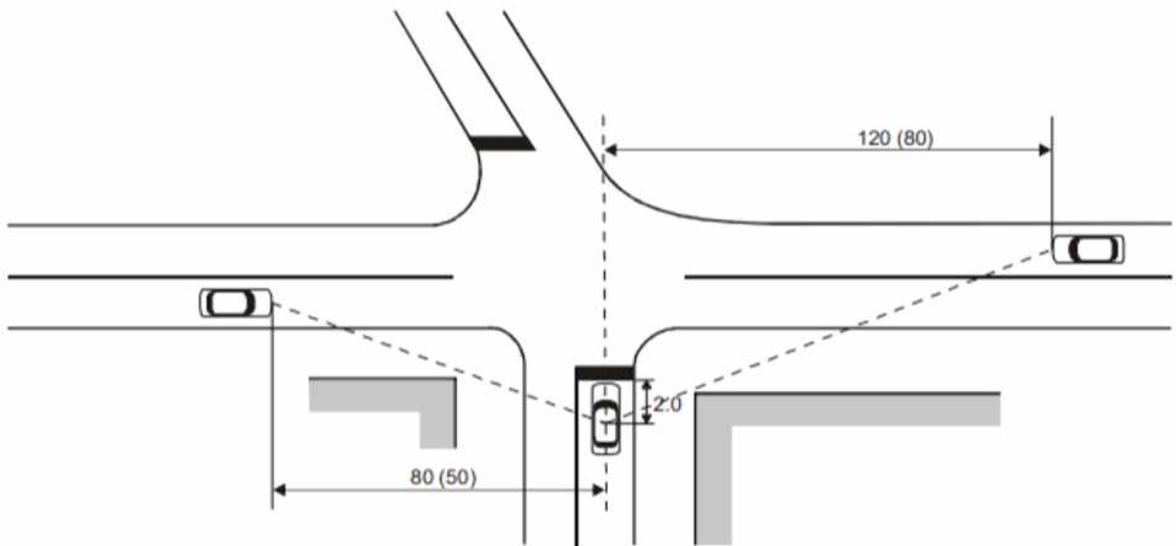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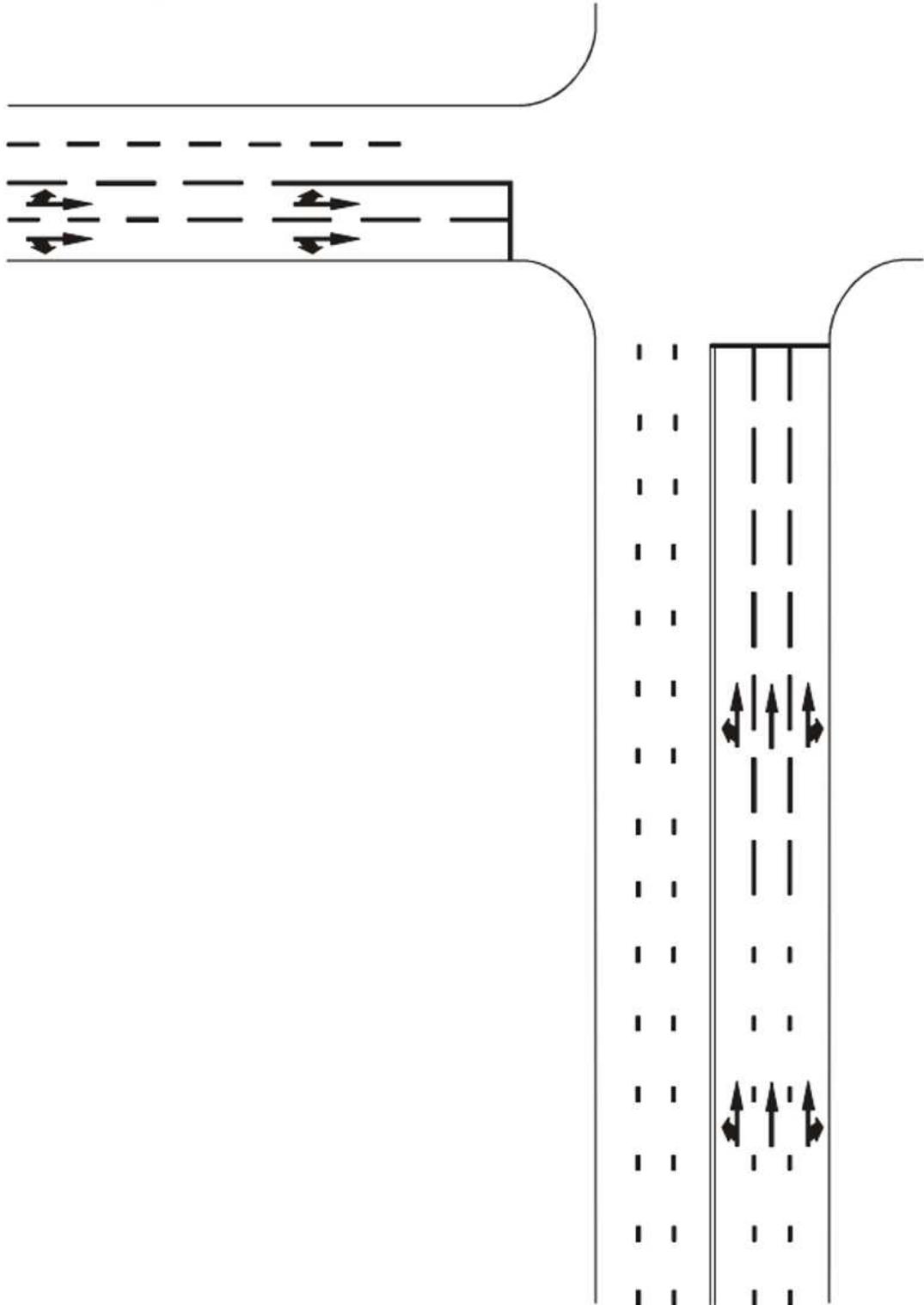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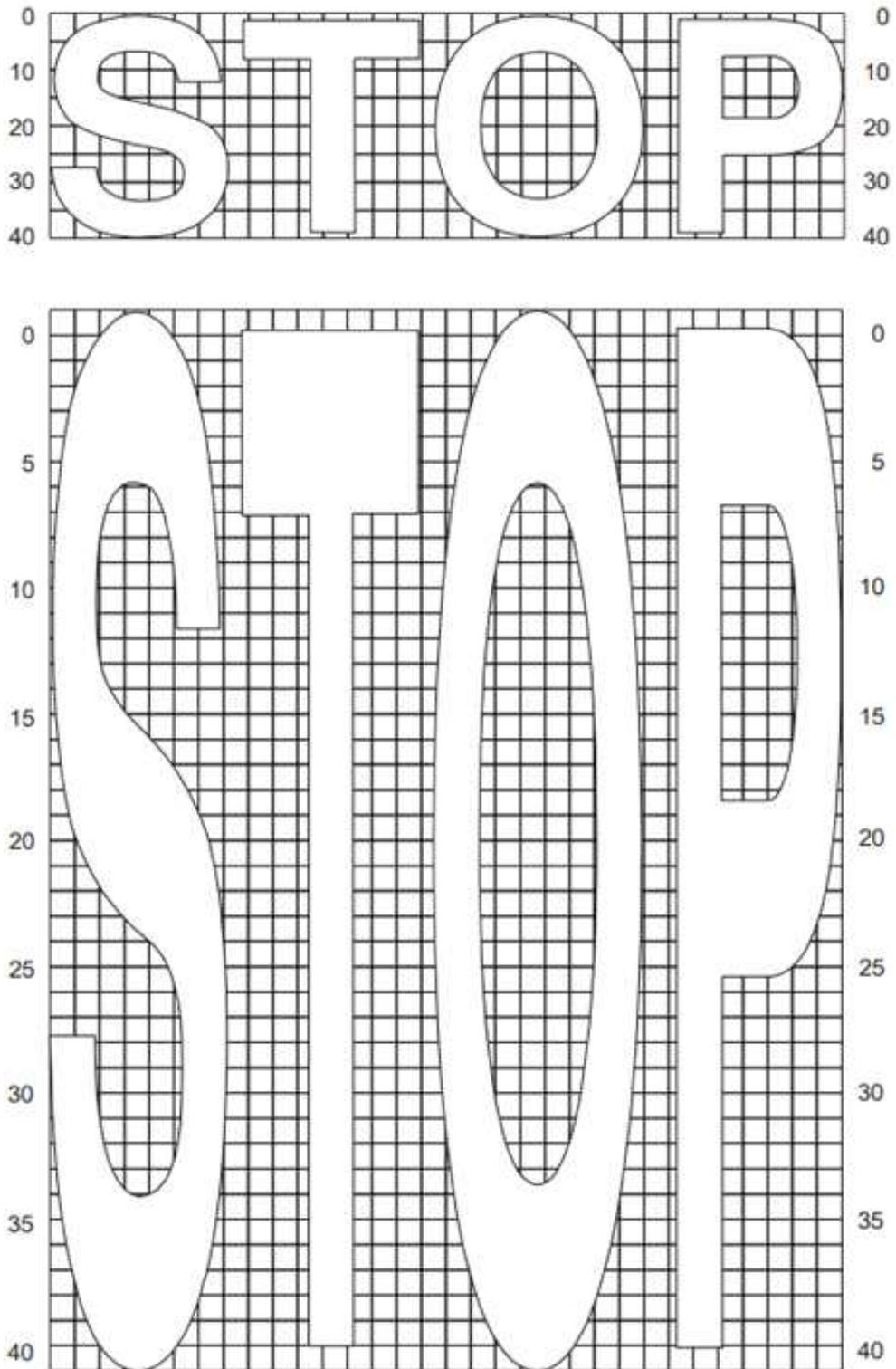
<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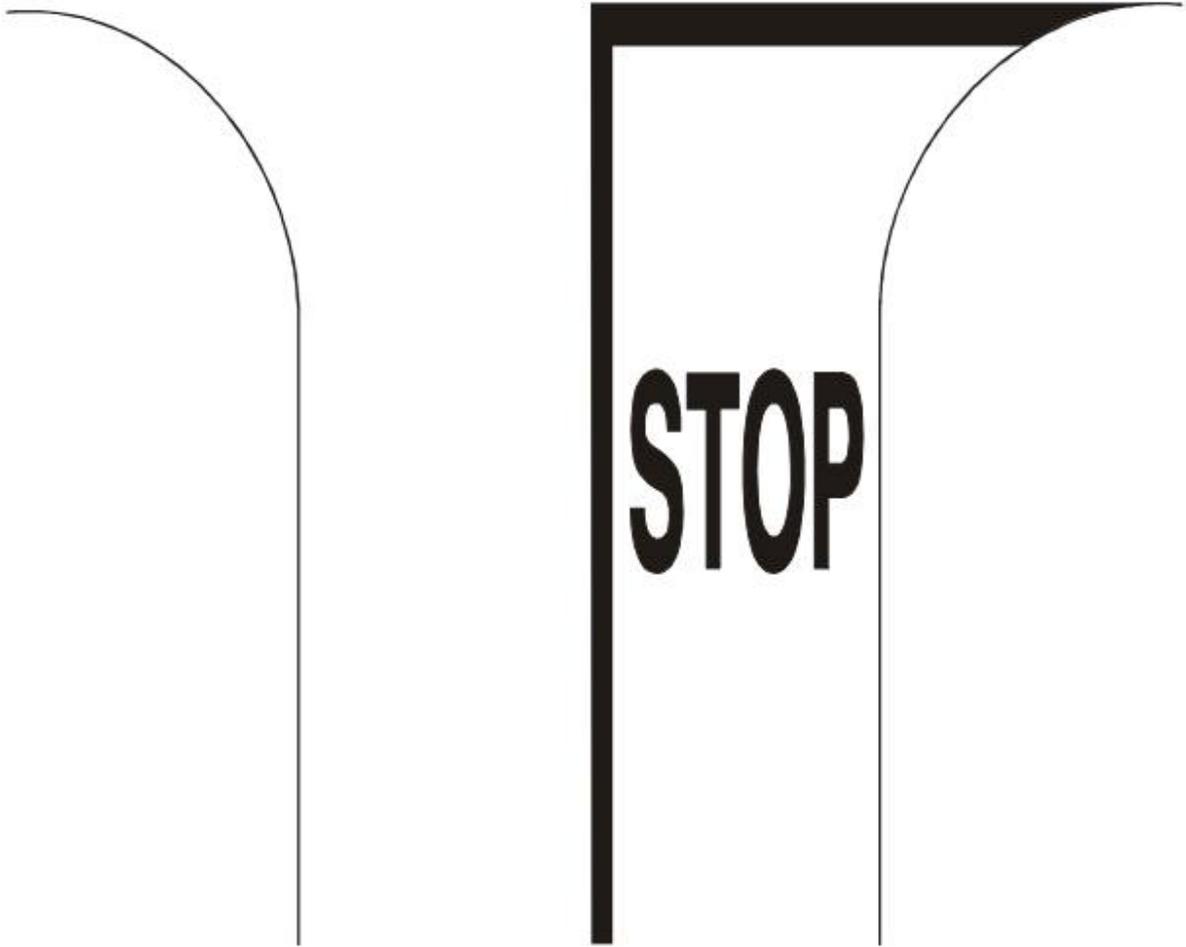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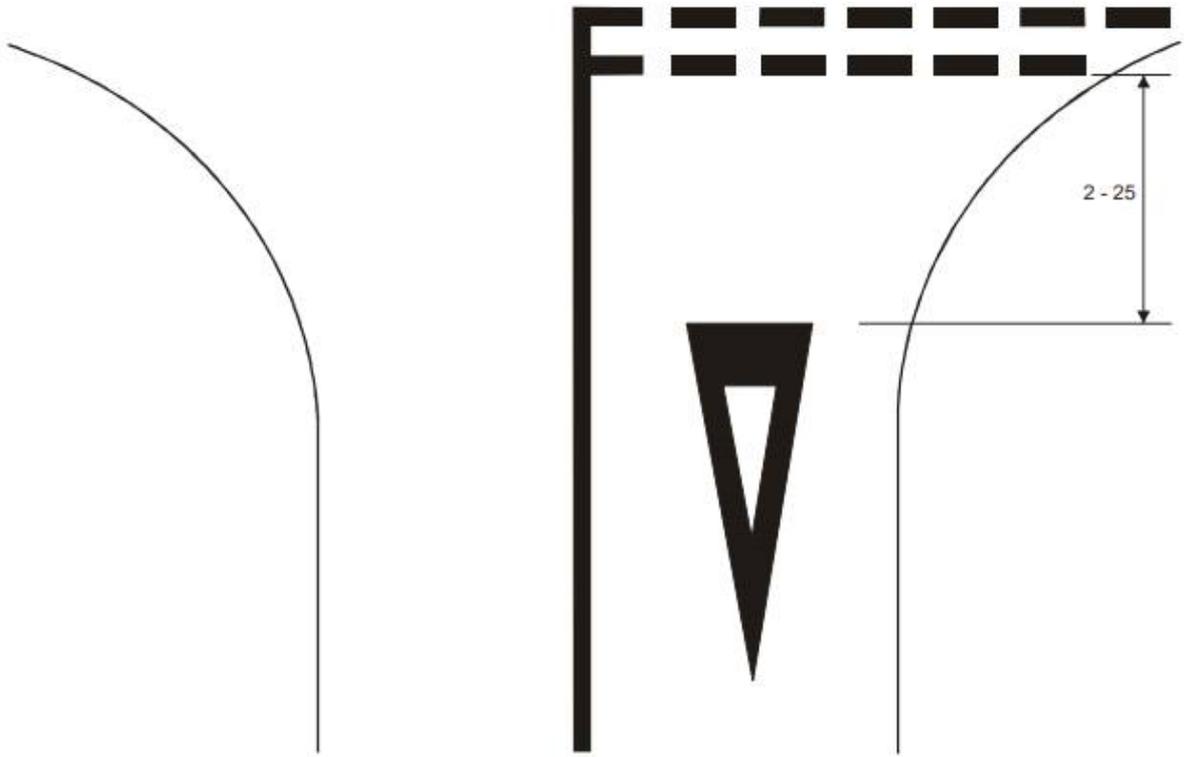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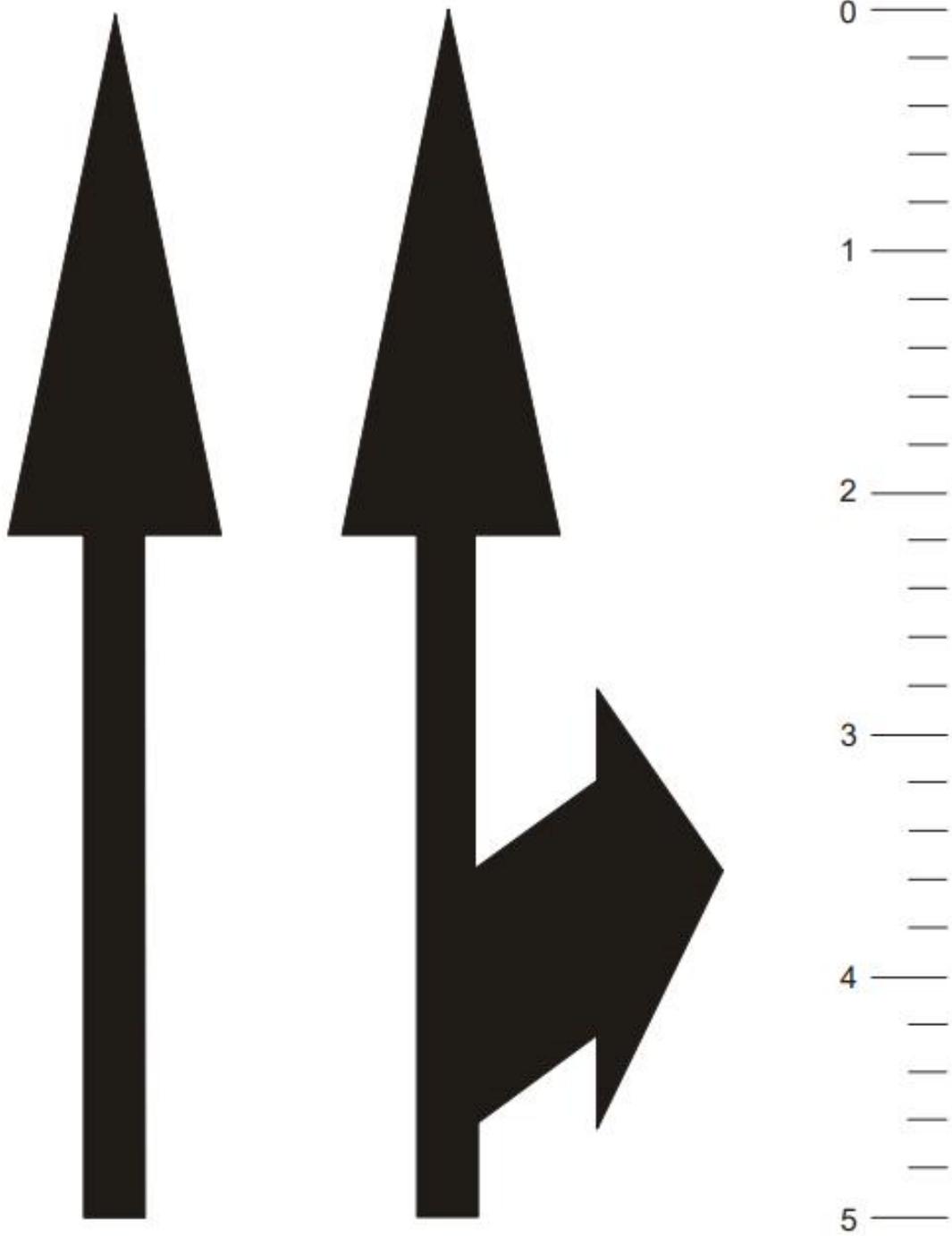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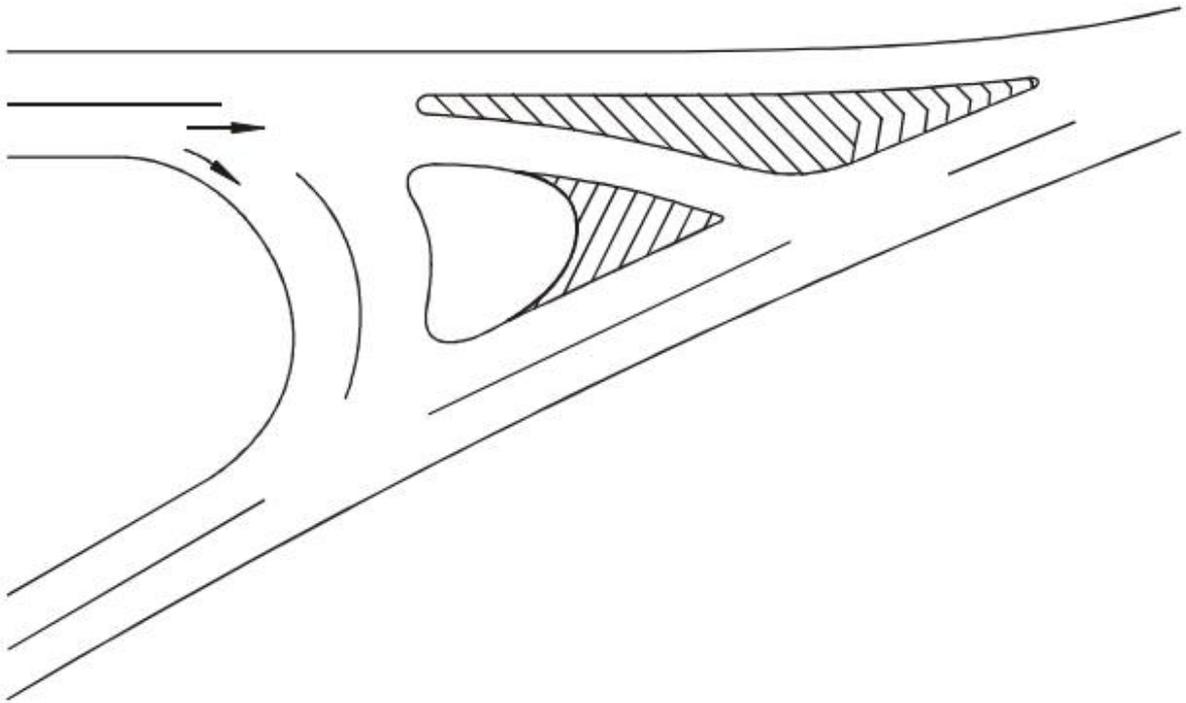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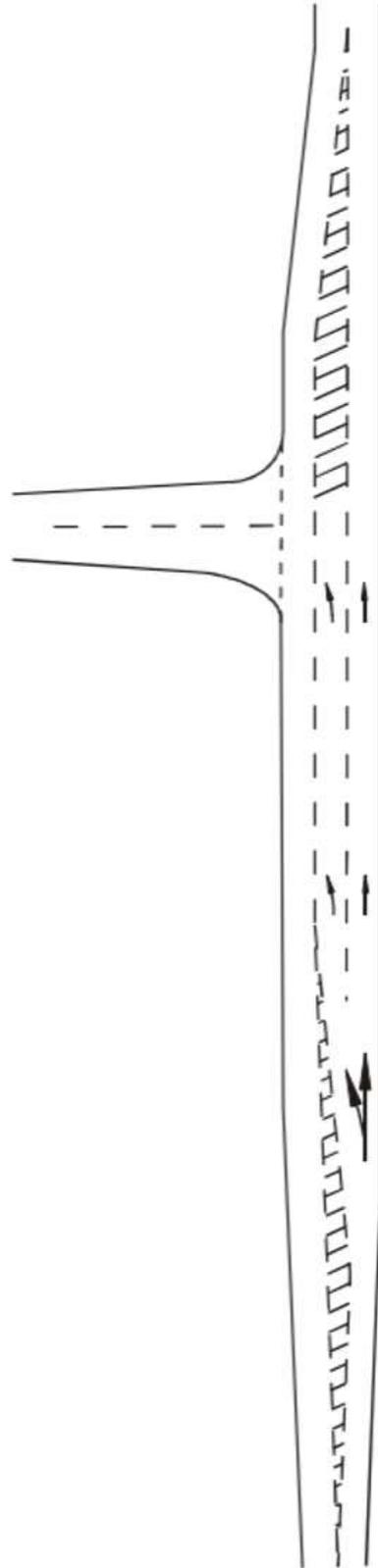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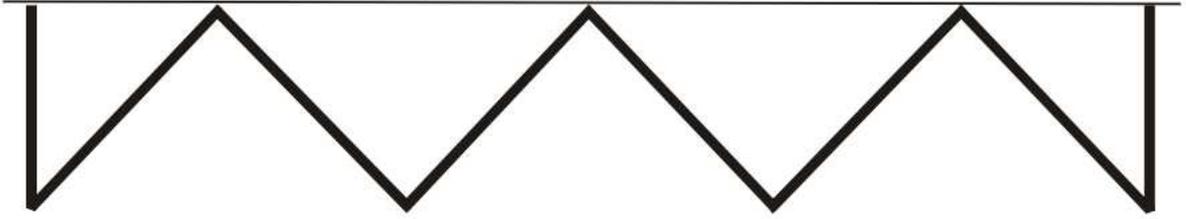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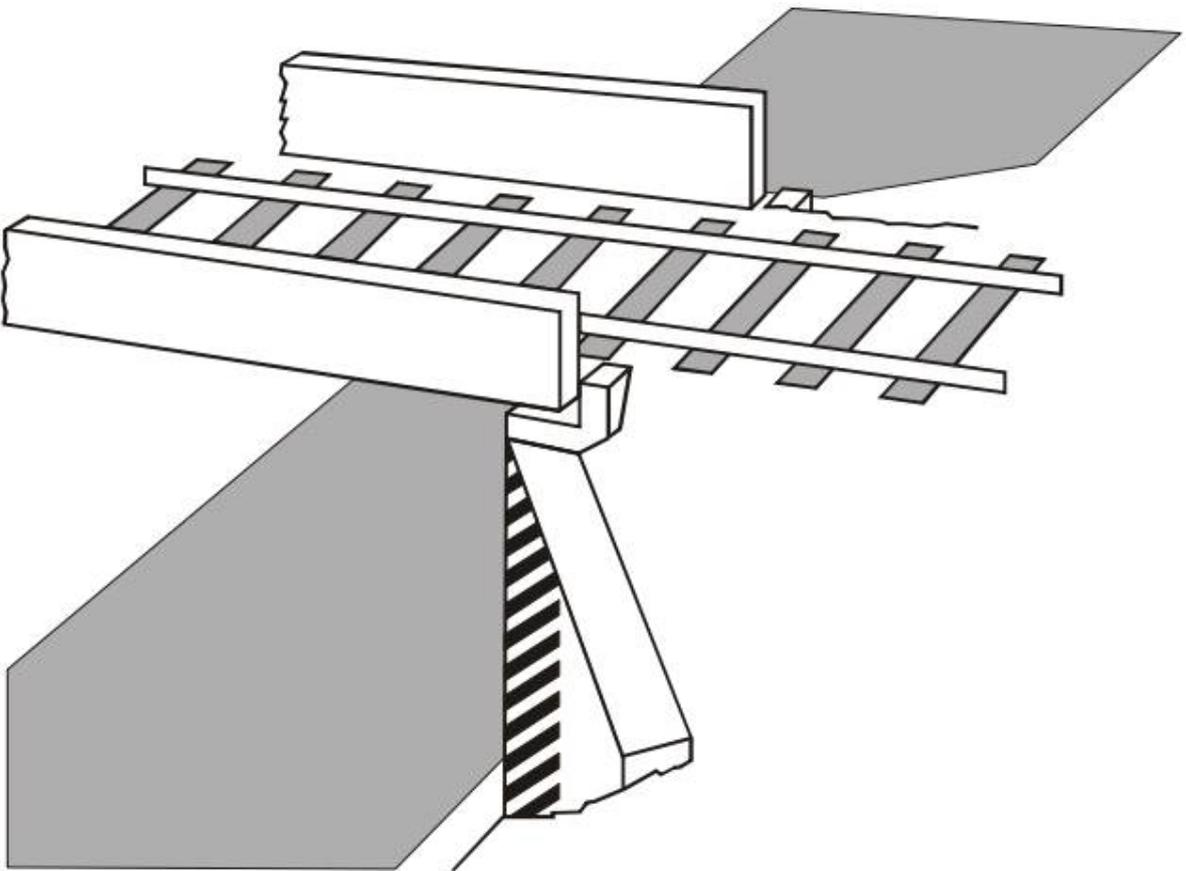
〈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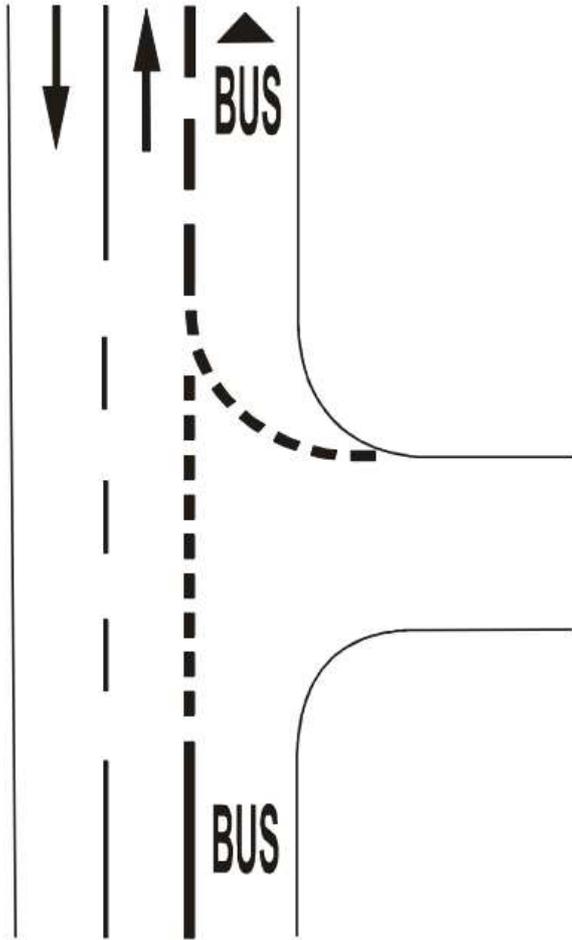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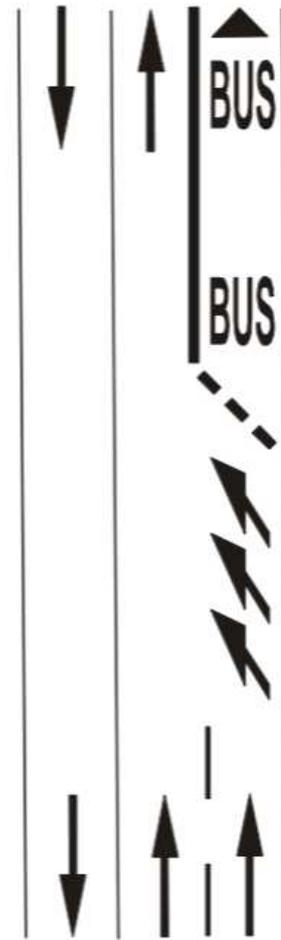
<그림 26>



<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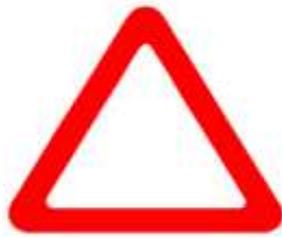
<그림 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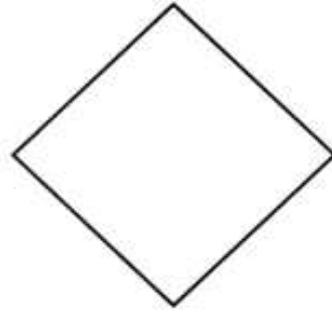
<그림 28b>

부록 3 그림

부록 3. 부록 1에서 언급된 표지, 기호 및 보조판의 색채 재현



A^a



A^b



A, 1^a



A, 1^b



A, 1^c



A, 1^d



A, 2^a



A, 2^b



A, 2^c



A, 2^d



A, 3^a



A, 3^b



A, 3^c



A, 3^d



A, 4^a



A, 4^b



A, 5



A, 6



A, 7^a



A, 7^b



A, 7^c



A, 8



A, 9



A, 10^a



A, 10^b



A, 11^a



A, 11^b



A, 12^a



A, 12^b



A, 13



A, 14



A, 15^a



A, 15^b



A, 16



A, 1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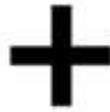
A, 17^a



A, 17^c



A, 18^a



A, 18^b



A, 18^c



A, 18^d



A, 18^e



A, 18^f



A, 18^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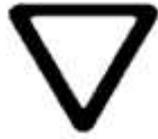
A, 19^a



A, 19^b



A, 19^c



A,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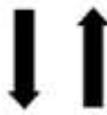
A, 21^a



A, 21^b



A, 22



A, 23



A,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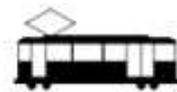
A, 25



A, 26^a



A, 26^b



A,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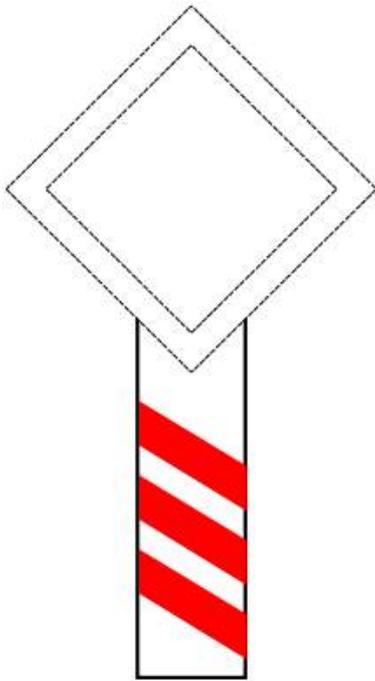
A, 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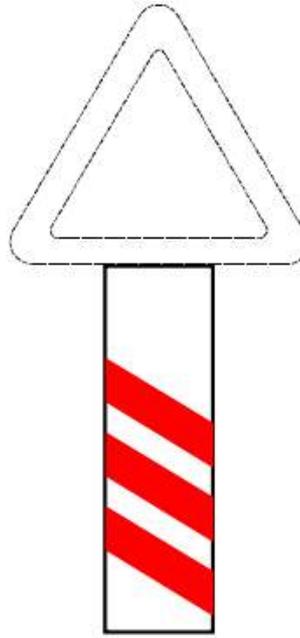
A, 28^b



A, 28^c



A, 29^a



A, 29^b



A, 2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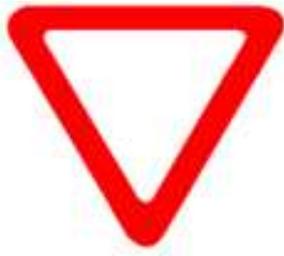
A, 30



A, 31



A,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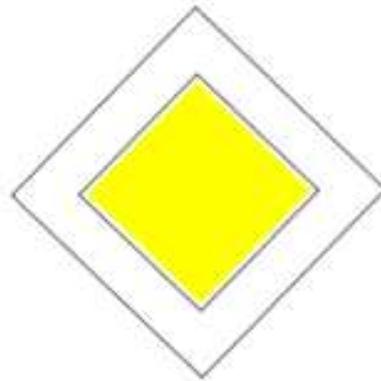
B, 1



B, 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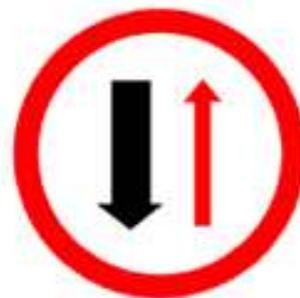
B, 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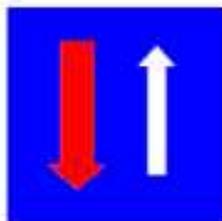
B, 3



B, 4



B,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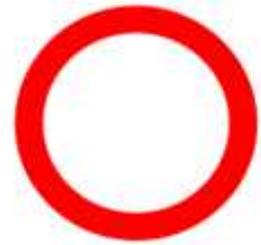
B, 6



C, 1^a



C, 1^b



C, 2



C, 3^a



C, 3^b



C, 3^c



C, 3^d



C, 3^e



C, 3^f



C, 3^g



C, 3^h



C, 3^l



C, 3^l



C, 3^k



C, 3^l



C, 4^a



C, 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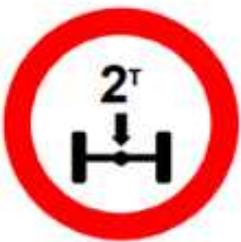
C, 5



C, 6



C, 7



C, 8



C, 9



C, 10



C, 11^a



C, 11^b



C, 12



C, 13^{aa}



C, 13^{ab}



C, 13^{ba}



C, 13^{bb}



C, 14



C,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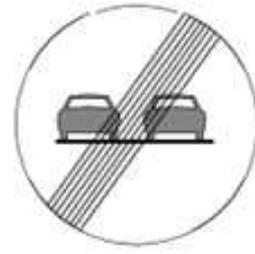
C, 16



C, 17^a



C, 17^b



C, 17^c



C, 17^d



C, 18



C, 19



C, 20^a



C, 20^b



D, 1^a



D, 1^a



D, 1^a



D, 1^a



D, 1^b



D, 2



D, 3



D, 4



D, 5



D,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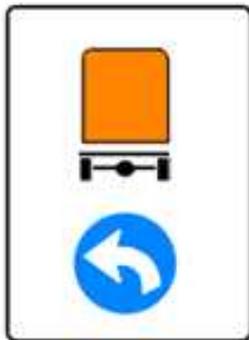
D,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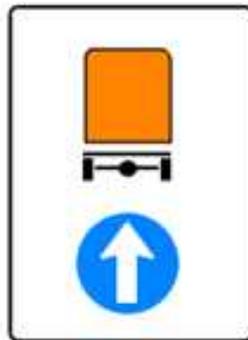
D,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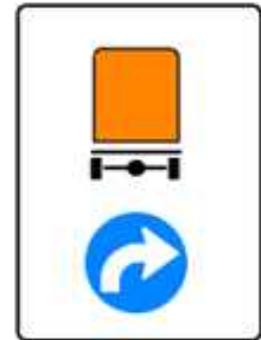
D, 9



D, 10^a



D, 10^b



D, 1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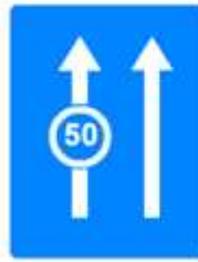
D, 11^a



D, 1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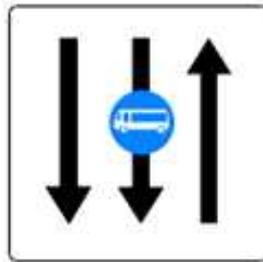
E,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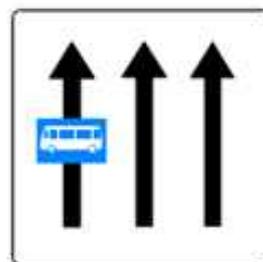
E, 1^b



E, 1^c



E, 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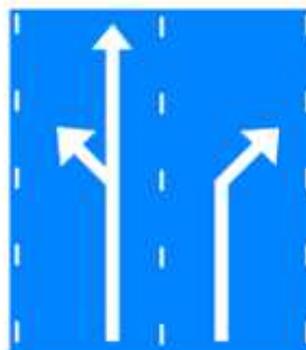
E, 2^b



E, 3^a



E, 3^b



E, 4



E, 5^a



E, 5^b



E, 6^a



E, 6^b



E, 7^a



E, 7^b



E, 7^c



E, 7^d



E, 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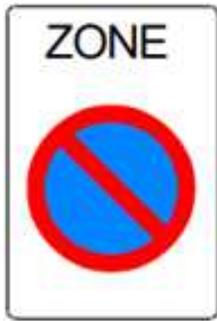
E, 8^b



E, 8^c



E, 8^d



E, 9^a



E, 9^b



E, 9^c



E, 9^d



E, 10^a



E, 10^b



E, 10^c



E, 10^d



E, 11^a



E, 11^b



E, 12^a



E, 12^b



E, 12^c



E, 13^a



E, 13^b



E, 14^a



E, 14^b



E, 14^c



E, 15



E, 16



E, 18^a



E, 18^b



F



F, 1^a



F, 1^b



F, 1^c



F, 2



F, 3



F, 4



F, 5



F, 6



F, 7



F, 8



F, 9



F, 10



F, 11



F, 12



F, 13



F, 17



F, 18



G, 1^a



G, 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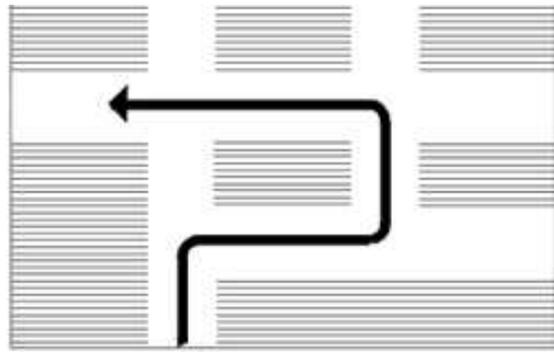
G, 1^c



G, 2^a



G, 2^b



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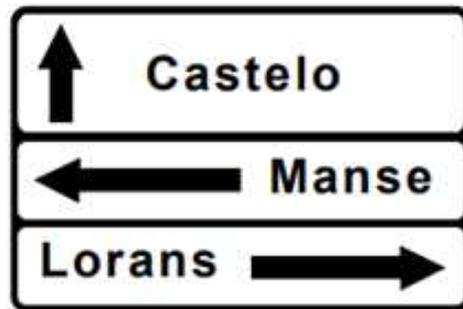
G, 4^a



G, 4^b



G, 4^c



G, 5



G, 6^a



G, 6^b



G, 6^c



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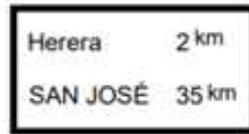
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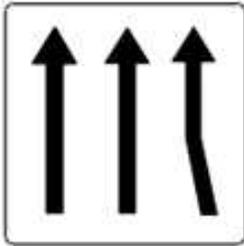
G, 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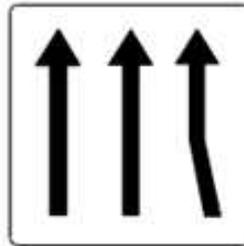
G, 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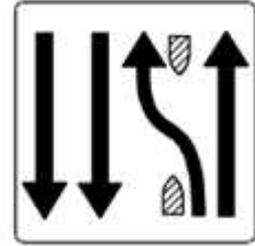
G, 10



G, 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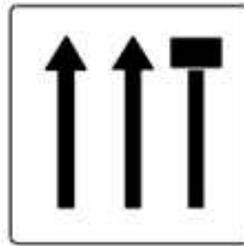
G, 11^b



G, 11^c



G, 12^a



G, 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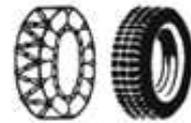
G, 13



G, 14



G, 15



G, 16



G, 17



G, 18



G, 19



G, 20



G, 21



G, 22^a



G, 22^b



G, 22^c



G, 23^a



G, 23^b



G, 24^a



G, 24^b



G, 24^c

20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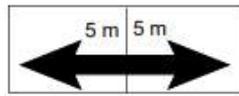
H, 1

↑..... K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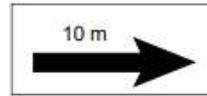
H, 2



H, 3^a



H,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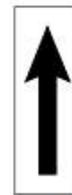
H, 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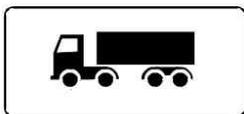
H, 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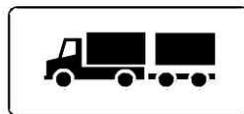
H, 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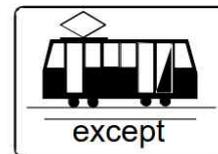
H, 4^c



H, 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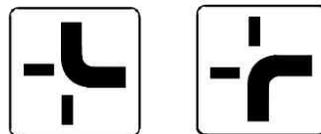
H, 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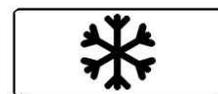
H, 6



H, 7



H, 8



H, 9